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경제분석

1991

한국노동연구원

目次

I. 序

1. 研究目的
2. 利用資料

II. 都市勤勞者家口의 特性

1. 人的構成
2. 家口主의 教育水準
3. 家口主의 經濟活動 및 雇傭形態
4. 住居狀態

III. 都市勤勞者家口의 收入構造

1. 概觀
2. 都市勤勞者家口의 所得構造
 - 가. 所得원천별 구성
 - 나. 所得5분위별 所得구조
 - 다. 가구주의 연령계층별 所得구조
 - 라. 가구주의 학력별 所得구조
 - 마. 가구구분별 所得구조
 - 바. 주거형태별 所得구조
3. 其他收入構造

IV. 都市勤勞者家口의 支出構造

1. 概觀
2. 都市勤勞者家口의 消費支出構造
 - 가. 소비지출구조의 개관
 - 나. 식료품비
 - 다. 주거관련비용
 - 라. 피복비, 보건의료비 및 교통통신비
 - 마. 문화관련비용
3. 非消費支出構造
4. 其他支出

V. 都市勤勞者家口의 家計收支

VI. 要約

表目次

- 〈표Ⅱ-1〉 도시가구의 가족구성원의 변화추이
- 〈표Ⅱ-2〉 비농가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추이
- 〈표Ⅱ-3〉 근로자가구의 소득10분위별 가족구성원(1989)
- 〈표Ⅱ-4〉 가구주의 연령계층별 소득5분위별 분포(1989)
- 〈표Ⅱ-5〉 소득5분위별 여성가구주의 비율(1989)
- 〈표Ⅱ-6〉 가구구분별 가구주의 교육수준(1989)
- 〈표Ⅱ-7〉 근로자가구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소득5분위별 분포(1989)
- 〈표Ⅱ-8〉 가구구분별 소득분포(1989)
- 〈표Ⅱ-9〉 근로자가구 가구주의 산업별 소득분포 현황(1989)
- 〈표Ⅱ-10〉 근로자가구 가구주의 직종별 소득분포 현황(1989)
- 〈표Ⅱ-11〉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직업(1989)
- 〈표Ⅱ-12〉 가구주의 학력 및 연령과 주거상태(1989)
- 〈표Ⅱ-13〉 가구구분별 주거형태(1989)
- 〈표Ⅱ-14〉 주거형태별 소득분포 현황(1989)
- 〈표Ⅲ-1〉 근로자가구의 총수입의 항목별 구성비 추이
- 〈표Ⅲ-2〉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원천별 소득구성비 추이
- 〈표Ⅲ-3〉 봉급자가구의 소득에 대한 노무자가구 소득비율
- 〈표Ⅲ-4〉 근로자가구의 소득5분위별 소득구조(1989)
- 〈표Ⅲ-5〉 가구주의 연령별 소득구조(1989)
- 〈표Ⅲ-6〉 가구주의 교육정도별 소득구조(1989)
- 〈표Ⅲ-7〉 중졸이하 근로자가구의 연령계층별 소득구조(1989)
- 〈표Ⅲ-8〉 고졸 근로자가구의 연령계층별 소득구조(1989)
- 〈표Ⅲ-9〉 전문대졸 이상 근로자가구의 연령계층별 소득구조(1989)
- 〈표Ⅲ-10〉 가구주의 학력별 · 연령계층별 소득격차(1989)
- 〈표Ⅲ-11〉 가구구분별 소득구조(1989)
- 〈표Ⅲ-12〉 가구구분별 가구주의 연령계층별 소득증가 현황(1989)
- 〈표Ⅲ-13〉 주거형태별 소득구조(1989)
- 〈표Ⅲ-14〉 근로자가구의 기타수입구조(1989)
- 〈표Ⅳ-1〉 근로자 가구의 총지출의 구성비 추이
- 〈표Ⅳ-2〉 가구구분별 소비지출 수준의 상대비교
- 〈표Ⅳ-3〉 근로자가구의 소득5분위별 소비지출구조(1989)
- 〈표Ⅳ-4〉 가구주의 교육정도별 소비지출구조(1989)
- 〈표Ⅳ-5〉 가구구분별 소비지출구조(1989)
- 〈표Ⅳ-6〉 주거형태별 소비지출구조(1989)
- 〈표Ⅳ-7〉 가구주 연령계층별 소비지출구조(1989)
- 〈표Ⅳ-8〉 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소비지출구조(1989)
- 〈표Ⅳ-9〉 소비지출액 중 식료품비의 구성비 추이
- 〈표Ⅳ-10〉 근로자가구의 소득10분위별 소비지출액 중 식료품비의 구성비
- 〈표Ⅳ-11〉 근로자가구의 식료품비의 내역별 구성비 추이
- 〈표Ⅳ-12〉 소득5분위별 식료품비의 구성(1989)
- 〈표Ⅳ-13〉 가구주의 교육정도별 식료품비의 구성(1989)
- 〈표Ⅳ-14〉 가구주의 연령계층별 식료품비의 구성(1989)
- 〈표Ⅳ-15〉 가구원수별 식료품비의 구성(1989)
- 〈표Ⅳ-16〉 가구구분별 식료품비의 구성(1989)
- 〈표Ⅳ-17〉 주거형태별 식료품비의 구성(1989)
- 〈표Ⅳ-18〉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주거관련비용의 변화 추이
- 〈표Ⅳ-19〉 소득5분위별 월평균 주거관련 비용(1989)
- 〈표Ⅳ-20〉 주거형태별 월평균 주거관련비용(1989)

- 〈표Ⅳ-21〉 소비지출에 대한 피복비, 보건의료비 및 교통통신비 비율
- 〈표Ⅳ-22〉 소득10분위별 피복비, 보건의료비 및 교통통신비 비율(1989)
- 〈표Ⅳ-23〉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에 대한 문화관련비용의 비율
- 〈표Ⅳ-24〉 근로자가구의 소득10분위별 문화관련비용(1989)
- 〈표Ⅳ-25〉 근로자가구의 대 근로자외가구의 비소비지출의 항목별 구성비 비교
- 〈표Ⅳ-26〉 봉급자가구 대 노무자가구의 비소비지출의 항목별 구성비 비교
- 〈표Ⅳ-27〉 기타지출의 항목별 구성비(1989)
- 〈표Ⅴ-1〉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소비성향 및 흑자율
- 〈표Ⅴ-2〉 근로자가구의 소득10분위별 월평균가계수지(1982)
- 〈표Ⅴ-3〉 근로자가구의 소득10분위별 월평균 가계수지(1989)
- 〈표Ⅴ-4〉 근로자가구의 가구주연령계층별 월평균 가계수지(1989)
- 〈표Ⅴ-5〉 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수지(1989)
- 〈표Ⅴ-6〉 근로자가구의 가구구분별 월평균 가계수지(1989)
- 〈표Ⅴ-7〉 근로자가구의 가구주 교육정도별 월평균 가계수지(1989)
- 〈표Ⅴ-8〉 근로자가구의 주거형태별 월평균 가계수지(1989)

I. 序

1. 研究目的

우리 경제는 지난 30여년간 세계에서 유례를 보지 못한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家計經濟에 있어서도 소득 및 지출패턴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그러나 총량적인 경제발전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의 果實分配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1989년 이후의 부동산투기, 주택가격의 상승, 전·월세가격의 급등, 불로소득의 만연 등은 分配構造와 當의 正當性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총취업자에서 차지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60년대초에는 30% 수준 지나지 않았으나 경제발전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 현재는 60%선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사실은 근로자계층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는 물론 근로자가구의 소득분배 상황이 전체가구의 소득분배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소득분배구조의 개선 측면에서도 근로자계층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을 높여 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는 개별근로자의 임금자료를 이용한 소득분배구조나 임금구조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었으며 근로자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근로자가구의 소득원이나 가계지출의 패턴 등에 대한 현황과악이 미흡하였고 실효성있는 근로복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 개개인이 아닌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가구의 소득과 지출패턴을 분석하여 근로자 가계경제의 현황과 변화추이를 밝힘으로써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利用資料

우리나라에서 家口를 단위로 하여 소득과 소비수준을 파악하는 조사로는 도시가계조사, 농가경제조사 및 어가경제조사가 있다. 농가경제조사와 어가경제조사는 각각 農家 및 漁家の 경제상태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며 본연구의 대상인 근로자가구에 대한 조사가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계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도시가계조사는 도시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가구의 생활수준 실태와 그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1963년부터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1974년까지는 식료품비에 한하여 가계부 기장방식에 의해 조사하고 나머지 비목은 분기별로 면접조사를 병행하였으나 1975년부터는 가계부형식으로 조사표를 전면 개편하여 수입·지출의 모든 항목을 가계부 記帳方式으로 조사하여 오고 있다.

도시가계조사는 미시적 측면에서 개별가계의 수지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나 그 성격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으므로 이용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도시가계조사는 행정구역상 市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가구를 母集團으로 하기 때문에 1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단독가구나 郡部地域에 거주하는 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 피용자가구인 勞勤勞者家口와 그 이외의 상인, 개인경영자, 법인경영자, 자유업종종사자, 무직가구 등 勤勞者外家口로 구분하여 근로자가구에 대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모두 조사하고 있으나 근로자외가구에 대해서는 지출사항만을 조사하고 있어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자료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도시가계조사는 소득분배에 관한 연구자료로서는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며, 도시지역 이외의 근로자자구에 대한 조사가 제외되고 있어 전체 근로자가구를 대표하지는 못한다.

둘째, 도시가계조사는 가구의 수입과 지출 사항을 매일매일 거짓없이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성공할 수 있는 어려운 조사이다. 따라서 사생활의 노출을 꺼려하고 매일매일 가계부를 기입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사에 대한 협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상가구의 가계부 기입능력이나 기장습관이 결여되어 있을 때에는 조사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조사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1989년 현재 약 4,500가구를 표본추출하여 월평균 4,230가구가 조사되고 있는바, 표본추출률은 1/1.278로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표본의 크기가 작고 표본추출률이 매우 낮다는 것은 조사결과의 표본오차가 클 가능성이 많으며 특히 수입·지출의

내역을 세분류하거나 가구특성별로 세분류할 경우에는 표본오차가 더욱 커지게 된다. 셋째, 도시가계조사를 시계열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制約은 1976년까지 所得上限線을 설정하고 소득상한선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점이다.¹⁾ 소득상한선이 평균소득보다 높지 설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소득상한선이 철폐된 1977년 이전의 도시가계조사 결과를 시계열분석에 이용하는 것은 소득 및 지출구조의 下向偏倚(downward bias)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상한선이 철폐된 1977년 이후의 자료에 있어서도 1988년 9월까지의 매월 표본의 일부를 교체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간 동일가구가 계속 조사되는 것은 표본가구의 10~15%에 지나지 않아 연평균 자료의 표본오차는 대단히 커지게 되며, 이러한 사실은 표본추출률이 매우 낮다는 사실과 더불어 도시가계조사의 시계열분석에 많은 제약과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년 동안 동일표본가구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사항을 조사한 1989년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중점을 두고 시계열적인 변화는 각년도의 도시가계연보 자료를 활용하되 수입과 지출이 비교적 안정적인 항목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석 1) 1963~67년까지는 연간소득 50만원, 1968~69년에는 연간소득 150만원, 1970~72년에는 연간소득 200만원, 1973~74년에는 월평균소득 20만원, 1975~76년에는 월평균소득 35만원을 소득상한선으로 하여 이것을 초과하는 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朱鶴中(1982), p. 411)

II. 都市勤勞者家口의 特性

1. 人的 構成

먼저 <표II-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인원수는 1963년의 5.56명에서 1989년에는 3.98명으로 연평균 1.3%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기적으로 보면 1963~70년 사이에는 가구당 인원수의 연평균 감소율이 0.6%인 반면 1970~80년 사이에는 연평균 1.6%, 1980~85년 사이에는 연평균 1.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가구당 인원수의 감소추세는 60년대에는 미미하였으나 70년대와 80년대 중반까지는 급속히 이루어졌으며 1985년 이후에는 다시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70년대와 80년대 중반까지 급속한 산업화와 진전과 농촌인구의 도시유입, 출산율 감소, 그리고 이에 따른 핵가족화 현상과 그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를 비교해 보면 가구당 인원수에 있어서는 1963년을 제외하면 근로자가구가 근로자외가구보다 다소 적지만 가구당 취업인원수에 있어서는 근로자가구가 근로자외가구보다 다소 많이 근로자가구는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구당 취업인원수는 근로자가구의 경우 1963년의 1.19명에서 1989년에는 1.42명으로, 근로자외가구의 경우 1963년의 1.08명에서 1989년에는 1.30명으로 모두 연평균 0.7%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시기별로 보면 근로자가구의 경우 1984년까지의 가구당 취업인원수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지만 1985년 이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즉 1984~89년 사이에 가구당 취업인원수는 연평균 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비농가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표II-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3~84년 사이에 0.9%의 증가율을 보이던 비농가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4~89년 사이에 0.9%의 증가율을 보이던 비농가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4~89년 사이에는 5.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80년대 중반 이후 도시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가구당 취업인원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Ⅱ-1〉 도시가구의 가족구성원의 변화추이

구 분		1963	1970	1980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근 로 자 가 구	가구당인원수	5.56	5.34	4.54	4.24	4.18	4.11	4.04	4.01	3.98
	가구당취업인원수	1.19	1.33	1.31	1.28	1.30	1.36	1.40	1.41	1.41
	취업자1인당 부양 인원수	3.67	3.02	2.47	2.31	2.22	2.02	1.89	1.84	1.80
근 로 자 외 가 구	가구당인원수	5.47	5.67	4.63	4.35	4.29	4.24	4.14	4.12	4.09
	가구당취업인원수	1.08	1.25	0.99	0.89	0.94	1.11	1.21	1.27	1.30
	취업자1인당부양 인원수	4.07	3.50	3.68	3.89	3.66	2.82	2.42	2.24	2.15

주 : 취업자 1인당 부양인원수 = (가구당 비취업인원수/가구당 취업인원수)

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표Ⅱ-2〉 비농가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1963	1970	1980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30.8	30.4	36.9	37.1	38.8	40.0	41.9	42.0	43.5

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근로자외가구의 경우 1980~85년 기간 동안에는 가구당 취업인원이 1명 이하로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1980년은 제2차 오일쇼크와 국내 정치의 불안정 등으로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해이며 1981년 이후 경제는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나 1985년까지는 실업률이 4% 이상을 기록하였던 시기였다. 즉 경기침체기에는 근로자가구의 취업인원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근로자외가구에 있어서는 고용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취업인원이 크게 감소할 뿐만 아니라 가구주의 취업상태마저 불안정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가 침체국면에 있을 경우에는 고용상태가 안정적인 근로자가구의 생활이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가구당 인원수의 감소추세와 가구당 취업인원수의 증가추세는 취업자 1인당 부양인원수를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시켰다. 근로자가구의 경우 1963년에 3.67명이던 취업자 1인당 부양인원수는 1989년에는 1.80명으로서 지난 26년간 연평균 2.7%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근로자외가구의 경우 1963년의 4.07명에서 1989년에는 2.15명으로 연평균 2.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취업자 1인당 부양인원수에 있어서는 근로자가구가 근로자외가구보다 적은 것이 특징이다. 도시근로자가구의 가족구성원을 소득 10분위별로 살펴보면 <표II-3> 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당 인원수, 가구당 취업인원수, 가구주 평균연령은 소득이 높을수록 많고 취업자 1인당 부양인원수는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적다.

<표II-3> 근로자가구의 소득10분위별 가족구성원(1989)

(단위: 명, 천원)

	가구당 인원수	가 구 당 취업인원수	취업자1인당 부양인원수	가 구 주 평균연령	평균소득
1분위	3.42	1.17	1.92	36.2	252.8
2분위	3.58	1.26	1.84	34.6	403.3
3분위	3.73	1.30	1.87	34.8	485.9
4분위	3.84	1.33	1.89	35.1	561.2
5분위	3.90	1.40	1.79	35.9	638.1
6분위	4.00	1.43	1.80	36.4	723.1
7분위	4.14	1.48	1.80	37.1	828.9
8분위	4.25	1.55	1.74	38.1	970.7
9분위	4.42	1.61	1.75	39.3	1,204.9
10분위	4.54	1.67	1.72	40.9	1,979.0
평 균	3.98	1.42	1.90	36.9	804.9

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도시가계연보」, 1989.

가구주의 연령계층별 소득5분위별 분포현황을 보면 <표II-4> 와 같다. 전체도시 근로자가구 가운데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은 가구주 연령이 30~39세의 제2분위에 속하는 근로자가구로서 도시근로자가구의 9.9%를 점하고 있다. 가구주의 연령이 40세 미만의 경우에는 하위 40% 소득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비중이 높으나 40세 이후에는 상위 40% 소득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가구주의 연령과 가구소득간에는 높은 正의 相關關係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구주의 연령이 50세 이상이 되면 40대의 경우보다는 하위 20% 소득계층에 속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노무직근로자의 50세 이후의 직업불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Ⅱ-4〉 가구주의 연령계층별 소득5분위별 분포(1989)

(단위: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29세이하	6.5 (30.5)	5.2 (24.3)	4.4 (20.7)	3.1 (14.7)	2.1 (9.8)	21.3 (100.0)
30~39세	8.8 (20.4)	9.9 (23.1)	8.8 (20.4)	8.4 (19.6)	7.1 (16.5)	43.0 (100.0)
40~49세	3.8 (15.4)	3.8 (15.5)	4.9 (20.1)	5.7 (23.0)	6.4 (26.0)	24.7 (100.0)
50세이상	2.2 (20.4)	1.4 (12.7)	1.6 (14.2)	2.1 (19.4)	3.7 (33.3)	11.0 (100.0)
계	21.3	20.3	19.7	19.4	19.3	100.0

주: ()안의 숫자는 각 行(row)별 구성비임.

일반적으로 빈곤가구 중에는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¹⁾ 이러한 사실은 〈표Ⅱ-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도시가계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즉 조사대상가구의 11.1%가 여성가구주인데 이의 61.2%가 하위 40% 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빈곤가구의 해소를 위해서는 여성가구주에 대한 안정된 직장알선과 성별임금격차가 해소가 중요 과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표Ⅱ-5〉 소득5분위별 여성가구주의 비율 (1989)

(단위: %)

	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여성가구주	11.1 (100.0)	4.8 (43.2)	2.0 (18.0)	1.6 (14.4)	1.4 (12.6)	1.2 (10.8)

주: ()안의 숫자는 여성가구주 전체를 100.0으로 보았을 경우의 소득 5분위별 구성비임.

주석 1) 徐相穆 外, 『貧困의 實態와 零細民 對策』, (1981. 10), p.114.

2. 家口主의 教育水準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표Ⅱ-6〉과 같다. 먼저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의 가구를 비교해 보면 중졸 및 고졸 가구주의 구성비에 있어서는 근로자가구가 낮고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의 구성비는 근로자가구가 높다. 따라서 가구주의 학력수준에 있어서는 근로자가구가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가구내에 있어서는 정신적·기술적·관리적인 사무에 종사하는 봉급자가구와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노무자가구¹⁾간에 현격한 학력수준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봉급자가구의 경우 중졸이하 학력의 구성비는 극히 미미한 반면에 전문대 이상이 60% 가까이 점하고 있고 고졸 이상은 97%를 넘고 있다. 봉급자가구내에서 공무원가구와 공무원의 사무종사자가구 간에는 학력수준의 격차는 거의 없는 반면에 노무자가구내에서는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가구와 임시 및 일용노무자가구 간에는 상당한 학력격차가 존재하며 前者가 後者보다 높다. 즉 중졸 이하 구성비가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가구의 경우 43.6%, 임시 및 일용노무자가구의 경우 69.9%로서 공무원가구의 1.6%, 공무원의 사무종사자가구의 3.0%에 비하여서는 월등히 높은 반면에 전문대 이상의 구성비는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가구의 경우 4.5%, 임시 및 일용노무자가구의 경우 2.2%에 그치고 있어 공무원가구의 58.6%, 공무원의 사무종사자가구의 60.0%에 비해서는 월등히 낮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가구주의 학력수준은 가구주가 사무직에 종사하느냐 노무직에 종사

〈표Ⅱ-6〉 가구구분별 가구주의 교육수준(1989)

(단위:%)

		중졸이하	고 졸	전문대이상	계	
근 로 자 가 구	봉 급 자	공무원	0.2	4.1	6.1	10.4
			1.6	39.7	58.6	
			0.6	9.2	24.7	
	자 가 구	공무원외 사무종사자	0.8	9.8	16.0	26.6
			3.0	37.0	60.0	
			2.7	22.0	64.5	
가 구 주	노 무 자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	24.1	28.7	2.5	55.3
			43.6	51.8	4.5	
			79.2	64.0	10.1	
	자	임시 및 일용노무자	5.4	2.1	0.2	7.7
			69.9	27.9	2.2	
			17.6	4.8	0.7	
소 계		30.5	44.8	24.7	100.0	
근로자외가구		33.4	45.7	20.9	100.0	

주: 각 난의 첫번째 숫자는 조사가구에 대한 구성비, 두번째 숫자는 각 行 (row)별 구성비, 그리고 세번째 숫자는 각 列(column)별 구성비를 나타냄.

하느냐와 안정성 있는 직업에의 취업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Ⅱ-6〉을 列(column)로 보면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는 0.6%만이 공무원이 되고 공무원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가구는 2.7%로서 중졸이하 가구주가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은 3.3%에 불과하고 나머지 96.7%는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노무직임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가구주는 9.2%가 공무원이며 22.0%가 공무원의 사무종사자로서 고졸가구주 중에서 31.2%가 사무직이고 나머지 68.8%는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는 공무원이 24.7%, 공무원의 사무종사자가 64.5%로서 89.2%가 사무직이며 노무직은 10.8%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고학력자는 주로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고 저학력자는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전체 도시근로자가구 중에서 노무자가구가 63%나 되며, 중졸이하 노무자가구는 29.5%, 고졸 노무자가구는 30.8%인 바, 이들 고졸이하 노무자가구를 중산층으로 육성하는 것이 향후 주요정책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구주의 학력수준은 가구주의 소득수준과 직결되므로 가구주의 학력에 따른 소득분포현황을 살펴보면 <표II-7> 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졸이하의 경우 제1분위 및 제2분위의 하위 40% 소득계층에 55.5%가 집중되어 있고 상위 20% 소득계층에는 약 8.9%만이 분포되어 있으나 고졸의 경우 각 분위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면서도 상위 20% 소득계층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14.5%가 분포되어 있다.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에는 상위 20% 소득계층에 40.7%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하위 40% 소득계층에는 20.9%밖에 분포되어 있지 않아 고학력가구일수록 상위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가구주의 학력수준은 가구주의 소득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교육기회의 균등화 정책은 소득분배개선의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표II-7> 근로자가구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소득5분위별 분포(1989)

(단위: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중졸 이하	32.9	22.6	19.5	16.2	8.9
고 졸	20.3	23.4	21.7	20.2	14.5
전문대이상	8.9	12.0	16.4	21.9	40.7

주석 1) 도시가계조사에서 근로자는 봉급자와 노무자로 구분되고 봉급자는 다시 공무원과 공무원의 사무종사자로 구분된다. 공무원은 관공서 또는 국공립의 병원 및 학교 등에 고용되어 주로 정신적·기술적·관리적인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공무원의 사무종사자는 개인회사, 상점, 공장, 병원, 학교, 정부 투자기관 등에서 정신적·기술적·관리적인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노무자는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와 임시 및 일용노무자로 구분되는데 前者는 관공서 또는 기업체에 30일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되어 주로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後者는 관공서 또는 기업체에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또는 매일매일의 계약에 의해 주로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家口主의 經濟活動 및 雇傭形態

근로자가구의 가구구분별 소득분포현황을 보면 <표II-8> 과 같다. 봉급자가구는 상위소득계층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반면에 노무자가구는 하위소득계층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봉급자가구의 경우 하위 40% 소득계층에는 22.6%가 분포되어 있어 노무자가구의 52.8%보다 훨씬 적은 반면에 상위 20%소득계층에는 36.5%가 분포되어 있어 노무자가구의 9.2%보다 훨씬 많다.

이와 같이 학력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봉급자가구는 상위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학력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노무자가구는 하위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교육기회의 평등화와 학력간·직종간 임금격차의 해소, 그리고 고용의 안정없이는 어떠한 소득분배정책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생산직근로자의 求人難 문제도 생산직과 사무직간의 극심한 생애임금격차가 대폭 축소되어야 시장기능에 따른 합리적인 인력의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Ⅱ-8〉 가구구분별 소득분포(1989)

(단위: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봉급자	9.3	13.3	17.5	23.4	36.5
노무자	28.3	24.5	21.0	17.0	9.2

근로자가구의 가구주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표Ⅱ-9〉와 같다.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하위소득계층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반면에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과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상위소득계층에 대한 집중도가 높고 운수·통신·창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구는 중위소득계층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 예컨대 건설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경우 제1분위에 32%, 제2분위에 24% 등 하위 40% 소득계층에 대한 집중도가 56%나 되는 반면 상위 20% 소득계층인 제5분위에 속하는 가구는 12%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약 34%가 상위 20% 소득계층에 속하는 반면 하위 40% 소득계층에 속하는 가구는 약 25%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가구주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과 소득분포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구주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별 소득분포현황을 살펴보면 〈표Ⅱ-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기술직 및 행정관리직과 사무직의 경우에는 상위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서비스직, 판매직, 생산직의 경우에는 하위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예컨대 전문기술직 및 행정관리직의 경우 상위 20% 소득계층에 50%가 집중되어 있고 하위 40% 소득계층에 약 18%가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생산직의 경우 하위 40% 소득계층에 약 51%가 집중되어 있고 상위 20% 소득계층에는 9.7%만이 분포되어 있어 소득분포의 격차가 극심하게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직종별 소득분포상의 격차는 〈표Ⅱ-1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가구주의 학력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기술 및 행정관리직은 87.5%가 전문대 이상의 학력소지자인 데 반하여 생산직은 전문대 이상이 3.8%에 불과하고 중졸이하가 46%를 점하고 있으며 서비스직은 전문대 이상 8.3%, 중졸이하 54%이다. 또한 중졸이하 가구주의 0.2%만이 전문기술 및 행정관리직에 종사하고 있고 사무직 종사자가 2.0%, 판매직종사자가 4.1%인 반면에 생산직에 79.6%, 서비스직에 13.2%가 분포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중졸이하 가구주는 주로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졸가구주는 59.1%가 생산직에, 그 다음으로는 25.0%가 사무직에 종사하며, 전문기술 및 행정관리직에는 2.5%만이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가구주는 사무직에 가장 많은 51.1%가 종사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전문기술 및 행정관리직에 33.1%가 종사하고 있으나 생산직에는 8.2%만이 종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구주의 학력수준과 직업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II-9〉 근로자가구 가구주의 산업별 소득분포 현황(1989)

(단위: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제조업	23.3	22.5	20.7	18.5	14.9	100.0
건설업	32.0	22.4	18.2	15.1	12.3	100.0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30.2	24.0	19.6	14.4	11.8	100.0
운수·창고 통신업	12.9	23.0	23.2	24.0	16.9	100.0
금융·보험업	16.0	15.1	18.5	19.5	30.9	100.0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12.3	13.2	17.5	23.5	33.5	100.0

〈표II-10〉 근로자가구 가구주의 직종별 소득분포 현황(1989)

(단위: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전문기술직 및 행정관리직	8.4	9.4	13.2	19.1	50.0	100.0
사무직	10.2	15.0	18.8	24.4	31.6	100.0
판매직	27.9	24.8	20.1	15.0	12.3	100.0
서비스직	32.5	18.9	18.5	17.6	12.5	100.0
생산직	26.5	24.6	21.4	17.8	9.7	100.0

〈표Ⅱ-11〉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직업(1989)

(단위:%)

	중졸이하	고 졸	전문대이상	계
전문기술 및 행정관리직	0.1	1.1	8.2	9.4
사무직	0.8	11.7	87.5	
	0.2	2.5	33.1	
판매직	0.6	11.2	12.5	24.5
	2.5	45.8	51.7	
	2.0	25.0	51.1	
서비스직	1.3	2.8	1.1	5.1
	24.6	54.5	20.9	
	4.1	6.2	4.3	
생산직	4.0	2.8	0.6	7.5
	53.9	37.8	8.3	
	13.2	6.3	2.5	
기 타	24.3	26.5	2.0	52.8
	46.0	50.2	3.8	
	79.6	59.1	8.2	
	0.2	0.4	0.2	0.9
	27.8	47.8	24.4	
	0.8	0.9	0.9	
계	30.5	44.8	24.7	100.00

주: 각 난의 첫번째 숫자는 조사가구에 대한 구성비, 두번째 숫자는 각 행(row)별 구성비, 그리고 세번째 숫자는 각 열(column)별 구성비를 나타냄.

4. 住居形態

주거형태를 크게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 및 관공사택)의 4가지로 구분할 경우 1989년의 도시가계조사에서 조사한 도시근로자가구 중에서 自家가 40.0%, 專賃가 36.9%, 月賃가 20.4% 그리고 其他가 2.7%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Ⅱ-12), 즉 도시근로자가구의 57.3%가 전·월세에 살고 있어 주택가격 및 전·월세가격의 안정이 근로자 생활안정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표Ⅱ-12〉를 보면 근로자가구를 평균적으로 볼 때에는 자가소유 근로자가구의 구성비는 가구주의 연령이 29세 이하의 경우 21.2%, 30대가 31.9%, 40대가 60.2%, 50대 이상이 62.2%로서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소유 비율이 높아지고 전·월세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가비율이 높아 중졸이하 가구주의 34.9%만이 자가소유인 데 반해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는 53.8%가 자가소유자로서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월세가구의 비중이 높다.

가구주가 중졸이하 학력을 가진 가구는 가구주가 20대일 때에는 월세 비중이 가장 높으나 30대에는 전세, 그리고 40대 이후에는 자가비율이 가장 높고, 가구주가 고졸 학력을 가진 가구는 가구주가 20대와 30대일 때에는 전세가구 비율이 가장 높으나 40대 이후에는 자가비율이 가장

높으며, 가구자가 전문대 이상의 학력소지자의 경우에는 20대에도 자가보유비율이 33.5%로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전세가구비율이 가장 높으며 30대 이후에는 자가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자가를 소유하는 시기는 학력이 높을수록 빨라지는데 주택의 규모나 질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자가소유비율이 중졸이하의 40대에 48.2%이나 전문대 이상의 경우에는 30대에 같은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져도 학력격차에 따른 자가소유비율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표Ⅱ-6〉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1989년 현재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주의 30.5%가 중졸이하이고 44.8%가 고졸학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중졸이하의 가구주는 50세 이후에도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55.4%에 불과하고 43.4%가 전월세의 불안정한 주거생활을 하고 있으며, 고졸가구주의 경우에도 50세 이

〈표Ⅱ-12〉 가구주의 학력 및 연령과 주거형태(1989)

(단위: %)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비
전 세	평 균	40.0	36.9	20.4	2.7	100.0
	29세이하	21.2	46.9	29.4	2.5	100.0
	30~39세	31.9	44.7	20.8	2.7	100.0
	40~49세	60.2	21.5	14.9	3.4	100.0
	50세이상	62.2	21.8	13.7	2.3	100.0
중졸이하	평 균	34.9	36.3	27.1	1.7	100.0
	29세이하	8.6	43.9	44.2	3.3	100.0
	30~39세	19.4	49.3	30.0	1.3	100.0
	40~49세	48.2	26.1	23.8	1.9	100.0
	50세이상	55.4	25.8	17.6	1.2	100.0
고 졸	평 균	35.7	40.0	22.0	2.3	100.0
	29세이하	19.3	47.7	30.5	2.5	100.0
	30~39세	29.6	45.6	22.3	2.5	100.0
	40~49세	65.4	21.7	11.3	1.6	100.0
	50세이상	63.0	19.7	14.3	3.0	100.0
전문대졸 이 상	평 균	53.8	32.1	9.3	4.8	100.0
	29세이하	33.5	47.1	17.6	1.8	100.0
	30~39세	48.2	38.4	9.0	4.4	100.0
	40~49세	73.8	12.9	4.7	8.6	100.0
	50세이상	79.1	13.9	2.8	4.2	100.0

후에까지 전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34.0%나 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의 3/4을 차지하는 고졸이하 가구주들의 주거생활이 50세 이후에도 불안정하다는 것은 근로자의 주거안정문제가 얼마나 시급한 당면과제인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겠다.

근로자가구의 주거형태를 가구구분별로 살펴보면 <표Ⅱ-1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봉급자가구는 노무자가구에 비해 자가비율이 높고 전월세 비율은 낮다. 봉급자가구는 자가보유율이 54.1%로서 노무자가구의 31.8% 보다 현저히 높아 주거생활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비율은 봉급자가구가 32.4%, 노무자가구가 39.5%로서 前者가 더 낮다. 월세비율도 봉급자가구가 10.0%, 노무자가구가 26.5%로서 前者가 더 낮다.

또한 <표Ⅱ-13> 에서는 전체 도시근로자가구 중 전세가구의 67.6%, 월세가구의 81.6%가 노무자가구라는 사실도 알 수 있는 바, 주로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노무자가구의 주거안정문제는 생산성 향상, 노사관계안정, 임금의 안정, 사회갈등 및 계층간 위화감 측면에서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주거형태별 소득분포를 보면 <표Ⅱ-14> 와 같다. 도시근로자가구 중 자가거주자구는 40.0%에 불과하고 전세가구가 36.9%, 월세가구가 20.4%로서 전월세가구가 57.3%이며 기타(무상 및 관공사택)가 2.8%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근로자가구의 4.4%는 소득5분위중 제1분위에 속하면서 자가에 거주하고 있고 12.9%는 제5분위에 속하면서 자가에 거주하고 있다. 하위40% 소득계층에 분포되어 있는 비율이 자가가구는 25.1%, 전세가구는 48.7%, 월세가구는 61.8%이며 상위 20% 소득계층에 속하는 가구비율이 자가가구는 32.3%, 전세가구는 12.0%, 월세가구는 6.6%로서 자가가구는 상위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전월세, 특히 월세가구는 하위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 5분위중 제1분위의 하위 20% 소득계층에 속하는 가구는 42.4%가 전세, 34.9%가 월세가 살고 있어 전월세

<표Ⅱ-13> 가구구분별 주거형태(1989)

(단위:%)

	자가	전세	월세	기타	계
봉 급 자	20.0	12.0	3.7	1.4	37.0
	54.1	32.4	10.0	3.5	
	50.0	32.4	18.4	49.0	
노 무 자	20.0	24.9	16.7	1.4	63.0
	31.8	39.5	26.5	2.2	
	50.0	67.6	81.6	51.0	
계	40.0	36.9	20.4	2.8	100.0

주: 각 난의 첫번째 숫자는 조사가구에 대한 구성비, 두번째 숫자는 각 행(row)별 구성비, 그리고 세번째 숫자는 각 열(column)별 구성비를 나타냄.

비중이 77.3%나 되며,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20.5%에 불과하다. 소득 5분위중 제2분위에 속하는 가구는 전세가 43.9%, 월세가 25.4%로서 전월세가구의 비중이 69.3%에 달하고 있으며 자가보유율은 27.9%에 불과하다. 상위 20%에 속하는 소득계층은 67.0%가 자가거주자구이나 전세가구가 23.0%, 월세가구가 6.9%로서 전월세가구도 29.9%나 된다. 그런데 도시근로자가구에서 소득 5분위중 제1분위에 속하는 전세가구가 9.0%, 월세가구가 7.4%, 그리고

소득5분위중 제2분위에 속하는 전세가구가 8.9%, 월세가구가 5.2%인 바, 이들 하위 40% 소득계층의 전월세가구인 30.5%의 도시근로자가구를 상대로 한 근로자 주거안정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이들 저소득가구는 주택자금조달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단순한 주택공급의 확대가 주거생활 안정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표Ⅱ-14〉 주거행태별 소득분포 현황(1989)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자 가	4.4	5.7	7.2	9.8	12.9	40.0
	10.9	14.2	18.1	24.5	32.3	
	20.5	27.9	36.6	50.6	67.0	
전 세	9.0	8.9	7.9	6.6	4.4	36.9
	24.5	24.2	21.5	17.8	12.0	
	42.4	43.9	40.2	33.9	23.0	
월 세	7.4	5.2	3.9	2.5	1.3	20.4
	36.4	25.4	19.2	12.4	6.6	
	34.9	25.4	19.9	13.0	6.9	
기 타	0.5	0.5	0.6	0.5	0.6	2.8
	17.8	19.7	23.0	18.0	21.5	
	2.3	2.7	3.2	2.6	3.1	
계	21.3	20.3	19.7	19.4	19.3	100.0

주: 각 난의 첫번째 숫자는 조사가구에 대한 구성비, 두번째 숫자는 각 행(row)별 구성비, 그리고 세번째 숫자는 각 열(column)별 구성비를 나타냄.

Ⅲ. 도시勤勞者家口의 收入構造

1. 概觀

도시가계조사에서 가구의 총수입은 소득과 기타수입 및 前期移越金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소득은 가구주 및 가구원이 피용자의 지위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현금 및 현물보수인 근로소득, 가구원이 자영업주 또는 고용주의 지위에서 직접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사업이윤인 사업소득, 가구원이 가내부업에 종사함으로써 얻은 부업소득 그리고 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 재산적 수입과 이전소득 등의 기타 소득으로 구성된다. 기타수입은 소득 이외의 수입으로서 재산상태에는 실질적인 증감이 없이 재산상의 형태가 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현금수입을 의미하며, 저금찾은

금액, 계탄돈, 빌린돈, 월부 및 외상, 유가증권 및 재산 매각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항목은 그에 상응하는 저금, 계부는 금액, 빌린돈 같은 금액, 월부외상 같은 금액, 유가증권 및 재산구입 등 기타 지출이 수반되게 된다. 그리고 전기이월금은 前期로부터 이월된 현금을 의미한다. 도시가계조사에서의 총수입은 근로자가구에 대해서만 조사되고 근로자외가구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근로자가구의 총수입구조의 변화 추이를 보면 <표Ⅲ-1> 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수입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9년 현재 약 60%로서 수입항목 중 그 비중이 가장 크며, 소득의 대부분을 근로소득이 점하고 있으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비율은 감소추세에 있다. 총수입 중 소득의 비율은 1985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기타 수입의 비중이 1987년 이후 급증하고 있으며 전기이월금의 비율은 감소추세에 있다.

<표Ⅲ-1> 근로자가구 총수입의 항목별 구성비 추이

(단위 : %, 총수입=100.0)

	1982	1985	1987	1989
총수입	100.0	100.0	100.0	100.0
소득	68.8	69.3	66.7	59.7
· 근로소득	61.7	60.9	57.3	51.5
· 사업 및 부업소득	1.3	1.6	1.8	1.5
· 기타소득	5.8	6.8	7.6	6.7
기타수입	16.8	16.6	20.8	29.3
전기이월금	14.4	14.1	12.5	11.0

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2. 都市勤勞者家口의 所得構造

가. 소득원천별 구성

도시가계조사에서 1963~81년까지는 소득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였으나 1982년 이후에는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소득원천별로 살펴보면 <표Ⅲ-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소득의 비중이 70년대에는 조금씩 증가하여 1970년의 86.3% 에서 1980년에는 90.2%까지 증가하였으나 80년대에는 다시 감소추세로 반전하여 1989년 현재는 1970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근로자가구를 다시 주로 사무적인 일에 종사하는 봉급자가구와 주로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노무자가구로 구분해서 보면, 봉급자가구의 경우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노무자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즉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노무자가구는 근로소득의 격차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서는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로소득의 비중이 노무자가구의 경우 70년대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8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하여 근로자가구의 경우 70년대에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80년대에는 다시 하락하고 있다.

한편 소득 중 가구주의 근로소득 비중은 봉급자가구의 경우 70년대에는 높아졌으나 80년대 들어 낮아졌으며, 노무자가구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표II-2>에서 살펴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봉급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100으로 보았을 경우 노무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을 보면 <표I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3년에는 노무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이 봉급자가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5.9%에 불과하였으나 1970년에는 62.4%까지 개선되었다. 그러나 1970년 이후에는 봉급자가구와 노무자가구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어 1985년에는 노무자가구의 소득은 봉급자가구의 57.2%로 하락하였다. 80년대 중반 이후 봉급자가구와 노무자가구간의 소득격차는 다시 감소되고 있으나 1989년 현재 노무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은 658천원으로서 봉급자가구의 월평균소득 1,047천원의 62.9%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III-2>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원천별 소득구성비 추이

(단위 : %, 소득총액=100)

	소득원천	1970	1980	1985	1989
계	근로소득	86.3	90.2	87.8	86.3
	· 가구주	79.3	81.0	78.9	73.9
	· 기타가구원	7.0	9.2	8.9	12.4
	기타소득	13.7	9.8	12.2	13.7
봉급자	근로소득	84.1	89.1	87.3	85.9
	· 가구주	77.8	81.7	80.9	76.7
	· 기타가구원	6.3	7.4	6.4	9.2
	기타소득	15.9	10.9	12.7	14.1
노무자	근로소득	90.6	90.9	88.4	86.7
	· 가구주	82.4	80.5	76.8	71.3
	· 기타가구원	8.2	10.4	11.6	15.4
	기타소득	9.4	9.1	11.6	13.3

주: 1981년까지는 기타소득에 자가 및 전세평가액이 포함되었으나 1982년 이후 자가 및 전세평가액은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1982년 이후의 분류체계에 따라 파악하였으며, 사업 및 부업소득도 기타소득에 포함시켰음.

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표Ⅲ-3〉 봉급자가구 소득에 대한 노무자가구 소득비율

1963	1970	1980	1985	1987	1988	1989
45.9	62.4	57.8	57.2	61.0	61.3	62.9

주: 봉급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을 100으로 보았을 경우의 비율(%)임.

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나. 소득 5분위별 소득구조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원천별 구성비를 소득 5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근로소득, 특히 가구주의 근로소득 비중이 낮으며 사업 및 부업소득과 기타소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Ⅲ-3). 또한 고소득계층일수록 기타소득 중에서 이자 및 배당금과 임대료 등의 재산소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稅源이 완전히 노출되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낮고 세원노출이 적은 이자 및 배당금과 임대료 등의 재산소득의 비중이 높다는 점은 앞으로의 소득분배구조에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수혜도 금액면에서나 비율면에서나 고소득계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 사회보장제도가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보전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수혜는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각종 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기타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받은 영세민 생활보조금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제도 도입 초기에 제도운영 및 사회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소득과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중산층 근로자를 중심으로 출발하여 적용을 확대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한 公的扶助가 미약한 상태에서 중산층에 특혜를 주는 제도라는 비난의 소지가 많았었다. 이러한 비난은 〈표Ⅲ-4〉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보장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부유층이 사회보장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며 서구제국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르그랜드」(Le Grand, 1982)는 영국의 경우 상위 20% 소득계층이 하위 20% 소득계층보다 3배나 많은 사회보장수혜를 받고 있어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소득분배의 형평화 전략은 실패했다고 주장하였다.¹⁾ 「모리스」(Morris, 1987)도 미국의 사회보장수혜는 중산층에 가장 많이 돌아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²⁾

그러나 외국에서도 상위소득계층일수록 사회보장수혜가 많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제를 합리화시켜 줄 수는 없다.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완비되지 못한 우리나라는 상위소득계층이 하위소득계층보다 월등히 많은 사회보장수혜를 받고 있어³⁾ 외국의 경우보다 불형평의 정도가 심하므로 저소득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모나 친지로부터의 受贈 및 補助도 비율면에서도 소득계층간의 큰 차이는 없으나 금액면에서는 고소득계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Ⅲ-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9년 현재 소득5분위 중 제1분위계층의 월평균 소득이 328천원인데 1989년의 월평균 표준생계비가 3인가족의 경우 390천원, 4인가족의 경우 475천원으로 추정한 연구결과(박영범·조우현 1989)와 비교해 보면 하위 20% 소득계층은 표준생계비 수준에도 미달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수준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Ⅲ-4〉 근로자가구의 소득5분위별 소득구조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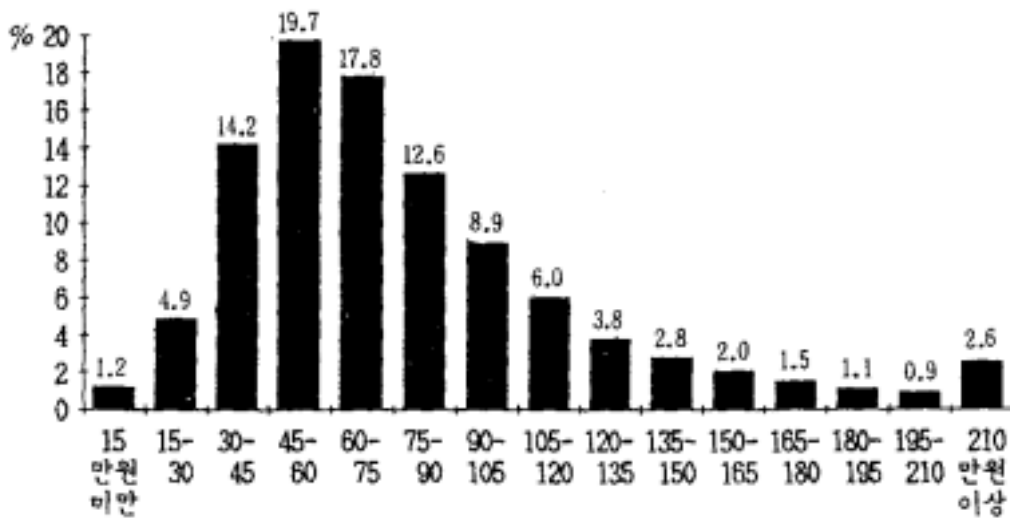
(단위:천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 득	328.0 (100.0)	523.6 (100.0)	680.6 (100.0)	899.8 (100.0)	1592.0 (100.0)
근모소득	294.1 (89.7)	467.7 (89.3)	600.3 (88.2)	785.6 (87.3)	1324.6 (83.2)
· 가구주	267.4 (81.5)	418.0 (79.8)	520.1 (76.4)	668.7 (74.3)	1101.2 (69.2)
· 기타 가구원	26.7 (8.2)	49.6 (9.5)	80.21 (11.8)	117.0 (13.0)	223.4 (14.0)
사업 및 부업소득	5.8 (1.8)	11.2 (2.1)	15.8 (2.3)	20.8 (2.3)	46.0 (2.9)
기타소득	28.1 (8.6)	44.7 (8.5)	64.5 (9.5)	93.4 (10.4)	221.4 (13.9)
· 이자 및 배당금	1.5 (0.5)	2.4 (0.5)	5.2 (0.8)	8.9 (1.0)	19.3 (1.2)
· 임대료	4.2 (1.3)	6.2 (1.2)	9.7 (1.4)	16.8 (1.9)	38.4 (2.4)
· 사회보장 수혜	0.8 (0.2)	0.9 (0.2)	2.5 (0.4)	3.2 (0.4)	7.0 (0.4)
· 수증 및 보조	9.0 (2.7)	14.0 (2.7)	18.0 (2.6)	24.5 (2.7)	49.4 (3.1)
· 기 타	12.7 (3.9)	21.1 (4.0)	29.1 (4.3)	40.1 (4.4)	107.4 (6.7)

주: ()안의 숫자는 소득에 대한 구성비임.

근로자가구의 소득계층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분포를 보면 [그림 Ⅲ-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45~60만원의 소득계층에 가장 많은 19.7%가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는 60~70만원의 소득계층에 17.8%가 분포되어 있다. 60만원 미만의 하위소득계층은 근로자가구의 40.0%, 60~105만원의 중위소득계층은 근로자가구의 39.3%, 그리고 105만원 이상의 상위소득계층은 근로자가구의 20.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Ⅲ-1] 근로자가구의 소득계층별 분포



다. 가구주의 연령계층별 소득구조

1989년 현재 가구주의 연령계층에 따른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구조를 살펴보면 <표Ⅲ-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도 증가하지만 그 구성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40대까지는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가구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과 금액이 증가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는 가구주가 50대 이후가 되면 가구당 취업인원수의 증가에 따라 가구주 이외의 기타 가구원의 소득이 급격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정년퇴직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감소한 데 기인하고 있다.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가구주의 연령이 30대와 40대일 때 크게 증가하여 40대에 최고수준에 도달한 후 50대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가구소득은 가구주의 연령이 50대 이상이 되어도 자녀들의 취업증가 등에 따른 기타가구원의 근로소득 증가와 기타소득의 증가에 따라 증가속도는 크게 둔화되지만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사업 및 부업소득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으며 30대와 40대에 증가하였다가 50대 이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 및 부업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은 20대와 50대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많고 30대와 40대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경제적 자립력이 약한 20대와 퇴직 연령에 도달한 50대 이후에 타가구로부터 수증 및 보조를 많이 받으며, 각종연금과 영세민생활보조금 등의 사회보장수혜가 집중되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다. 임대료 소득은 자가보유율이 높은 50대 이후에 가장 많으며, 이자 및 배당금소득은 40대에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주의 연령계층별 소득구조는 가구주의 학력·직업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바, 이러한 요인들은 가구주의 학력별·가구구분별 소득구조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Ⅲ-5〉 가구주의 연령별 소득구조 (1989)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가구당 인원수(명)	3.20	3.97	4.59	4.24
가구당취업 인원수(명)	1.38	1.30	1.45	1.91
소득(천원)	664.7(100.0)	755.2(100.0)	920.0(100.0)	943.4(100.0)
근로소득	538.2 (81.0)	768.9 (87.6)	811.0 (88.2)	805.0 (85.3)
· 가구주	448.3 (67.4)	609.6 (78.6)	703.5 (76.5)	580.9 (61.6)
· 기타가구원	89.9 (13.6)	69.3 (9.0)	107.6 (11.7)	224.1 (23.7)
사업 및 부업소득	9.9 (1.5)	21.7 (2.8)	24.6 (2.7)	22.2 (2.4)
기타소득	116.7 (17.5)	74.6 (9.6)	84.4 (9.2)	116.2 (12.3)
· 이자 및 배당금	8.7 (1.3)	6.4 (0.8)	9.4 (1.0)	4.9 (0.5)
· 임대료	15.6 (2.3)	9.8 (1.3)	19.8 (2.2)	24.3 (2.6)
· 사회보장수혜	5.1 (0.8)	0.5 (0.1)	2.8 (0.3)	8.3 (0.9)
· 수증 및 보조	39.9 (6.0)	16.8 (2.2)	17.2 (1.9)	27.9 (3.0)
· 기 타	47.3 (7.1)	41.1 (5.3)	35.3 (3.8)	50.8 (5.4)

주 : ()안의 숫자는 소득에 대한 구성비임.

라. 가구주의 학력별 소득구조

1989년 현재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주의 학력별 소득구조를 보면 〈표Ⅲ-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가구주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높아 전체가구소득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졸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100.0으로 보면 중졸이하 가구는 85.9, 전문대 이상 가구는 148.4로서 가구주의 학력수준이 가구소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Ⅲ-6〉을 보면 가구주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중에서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점하는 비중이 높고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의 비중이 낮으며 이자 및 배당금과 임대료 등의 재산소득의 비중이 높고 사회보장수혜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낮기 때문에 낮은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가구주 이외의 가구원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아지고 따라서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1989년도 도시가계조사에 의하면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가구당 취업인원수가 중졸이하 가구는 1.62명, 고졸가구가 1.37명, 전문대 이상 가구는 1.28명으로서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 이외의 가구원의 취업인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Ⅲ-7〉에서 〈표Ⅲ-10〉까지는 도시근로자가구의 학력별·연령계층별 소득구조가 나타나 있다. 〈표Ⅲ-7〉을 보면 중졸이하 근로자가구의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연령계층별로 큰 차이가 없으며 30대에 약간 증가하다가 40대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50대 이후에는 29세이하의 연령계층보다도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표Ⅲ-8〉과 〈표Ⅲ-9〉를 보면 고졸이상 학력을 가진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40대까지는 연령증가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하며, 50대 이후에 가서는 약간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졸이상 학력의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연령에 따라 급격히 상승하고 40대에 최고로 달하는 데 반하여 중졸이하 가구주의 대부분은 주로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노무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생산성은 육체적인 능력과 거의 비례하여 30대에 최고조에 달하였다가 40대부터 감소하고 있다.

가구주의 학력에 따른 연령계층별 가구주의 근로소득 격차를 보면 〈표Ⅲ-10〉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29세 이하에서는 가구주의 학력별 근로소득 격차가 크지 않으나 연령증가에 따라 그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다.

한편 가구주의 이외의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비중은 어느 연령계층에서나 가구주의 학력이 낮을수록 높다. 가구주의 연령계층별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비중은 29세 이하와 50세 이후에 높고 30대와 40대에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중학교이하 가구주의 경우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비중이 높은 것은 가구소득이 낮기 때문에 자녀양육 후에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중학교 졸업후 바로 취업하는 자녀가 상대적으로 많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 및 부업소득과 기타소득의 비중은 가구주의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표Ⅲ-10),

〈표Ⅲ-6〉 가구주의 교육정도별 소득구조 (1989)

(단위 : 천원, %)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 이상
소 득	640.2(100.0)	745.5(100.0)	1106.5(100.0)
근로소득	550.1(85.9)	646.7(86.7)	951.0(85.9)
· 가구주	419.6(65.6)	563.0(75.5)	859.5(77.7)
· 기타가구원	130.6(20.4)	83.7(11.2)	91.5(8.3)
사업 및 부업소득	17.1 (2.7)	17.1 (2.3)	28.5 (2.6)
기타소득	73.0(11.4)	81.7(11.0)	127.0(11.5)
· 이자 및 배당금	3.8 (0.6)	6.9 (0.9)	12.8 (1.1)
· 임대료	11.1 (1.7)	13.0 (1.7)	23.6 (2.1)
· 사회보장 수혜	1.9 (0.3)	2.0 (0.3)	5.5 (0.5)
· 수증 및 보조	24.2 (3.8)	20.3 (2.7)	26.5 (2.4)
· 기 타	31.9 (5.0)	39.6 (5.3)	58.6 (5.3)

주 : ()안의 숫자는 소득에 대한 비율임.

〈표Ⅲ-7〉 중졸이하 근로자가구의 연령계층별 소득구조(1989)

(단위 : 천원, %)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세이상
소 득	557.3(100.0)	591.1(100.0)	678.0(100.0)	711.8(100.0)
근로소득	474.1 (85.7)	511.1 (86.5)	589.9 (87.0)	595.4 (83.6)
· 가구주	384.7 (69.0)	441.2 (74.6)	440.3 (64.9)	361.5 (50.8)
· 기타가구원	89.4 (16.1)	69.9 (11.8)	149.6 (22.1)	234.0 (32.8)
사업 및 부업 소득	11.9 (2.1)	18.1 (3.1)	20.0 (2.9)	13.2 (1.9)
기타소득	71.3 (12.8)	61.9 (10.5)	68.1 (10.4)	103.2 (14.5)
· 이자 및 배당금	1.3 (0.2)	3.6 (0.6)	5.9 (0.9)	2.1 (0.3)
· 임대료	10.3 (1.8)	6.5 (1.1)	13.3 (2.0)	16.1 (2.3)
· 사회보장 수혜	0.1 (0.1)	0.3 (0.1)	3.1 (0.5)	3.8 (0.1)
· 수증 및 보조	19.2 (3.4)	20.1 (3.4)	21.9 (3.2)	38.7 (5.4)
· 기 타	40.4 (7.2)	31.4 (5.3)	23.9 (3.5)	42.5 (6.0)

주 : ()안의 숫자는 소득에 대한 비율임.

〈표Ⅲ-8〉 고졸 근로자가구의 연령계층별 소득구조(1989)

(단위 : 천원, %)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세이상
소 득	634.8(100.0)	725.9(100.0)	870.9(100.0)	1006.8(100.0)
근로소득	531.7 (85.7)	637.5 (87.8)	764.9 (87.8)	871.2 (86.5)
· 가구주	436.7 (69.0)	579.6 (79.8)	679.8 (78.1)	649.1 (64.5)
· 기타가구원	95.0 (16.1)	57.9 (8.0)	85.1 (9.8)	222.1 (22.1)
사업 및 부업 소득	7.7 (2.1)	21.3 (2.9)	17.8 (2.0)	25.8 (2.6)
기타소득	95.4 (12.8)	67.2 (9.2)	88.2 (10.1)	109.8 (10.9)
· 이자 및 배 당금	6.6 (0.2)	5.7 (0.8)	10.8 (1.2)	5.5 (0.5)
· 임대료	8.6 (1.8)	10.3 (1.4)	23.0 (2.6)	21.2 (2.1)
· 사회보장 수혜	2.6 (0.1)	0.5 (0.1)	2.0 (0.2)	11.5 (1.1)
· 수급 및 보조	35.7 (3.4)	14.2 (2.0)	14.4 (1.7)	15.0 (1.5)
· 기 타	41.9 (7.2)	36.5 (5.0)	38.0 (4.4)	56.6 (5.6)

주 : ()안의 숫자는 소득에 대한 비율임.

〈표Ⅲ-9〉 전문대졸 이상 근로자가구의 연령계층별 소득구조(1989)

(단위 : 천원, %)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세이상
소 득	802.6(100.0)	1032.5(100.0)	1386.4(100.0)	1478.3(100.0)
근로소득	593.1 (73.9)	907.1 (87.9)	1239.1 (89.4)	1275.4 (86.3)
·가구주	515.2 (64.2)	817.6 (79.2)	1168.1 (84.3)	1076.0 (72.8)
·기타가구원	77.9 (9.7)	89.5 (8.7)	71.0 (5.1)	199.4 (13.5)
사업 및 부업 소 득	13.6 (1.7)	25.9 (2.5)	42.0 (3.0)	41.3 (2.8)
기타소득	195.9 (24.4)	99.4 (9.6)	105.3 (7.6)	161.6 (0.9)
·이자 및 배당금	18.5 (2.3)	10.1 (1.0)	13.0 (0.1)	11.7 (0.8)
·임대료	35.7 (4.4)	11.7 (1.1)	25.7 (1.9)	50.6 (3.4)
·사회보장 수혜	14.3 (1.8)	0.6 (0.1)	3.4 (0.2)	16.3 (1.1)
·수증 및 보조	62.7 (7.8)	18.3 (1.8)	13.3 (1.0)	17.0 (1.1)
·기 타	64.7 (8.1)	58.7 (5.7)	49.9 (3.6)	66.0 (4.5)

주 : ()안의 숫자는 소득에 대한 비율임.

〈표Ⅲ-10〉 가구주의 학력별·연령계층별 소득격차(1989)

(고졸=100.0)

		평균	29세 이하	30~ 39세	40~ 49세	50세 이상
가구소득	중졸 이하	85.9	87.8	81.4	77.9	70.0
	전문대 이상	148.4	126.4	142.2	159.2	146.8
근로소득	중졸 이하	85.1	89.2	80.2	77.1	68.3
	전문대 이상	147.1	115.5	142.3	161.0	146.4
· 가구주	중졸 이하	74.5	88.1	76.1	64.8	55.7
	전문대 이상	152.7	118.0	141.1	171.8	165.8
· 기타가구원	중졸 이하	155.9	94.7	120.7	175.8	105.3
	전문대 이상	109.3	82.0	154.6	83.4	89.8
비근로소득	중졸 이하	91.1	80.8	90.6	83.1	85.9
	전문대 이상	157.4	203.2	141.7	139.0	149.6

마. 가구구분별 소득구조

근로자가구를 크게 봉급자가구와 노무자가구로 구분해서 소득구조를 비교해 보면 〈표Ⅲ-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봉급자가구는 노무자가구보다 약 1.6배의 가구소득을 얻고 있다. 가구주의 근로소득 비중은 봉급자가구가 높은 반면에 가구주의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비중은 노무자가구가 높다. 사업 및 부업소득과 기타소득의 비중은 봉급자가구와 노무자가구간에 큰 차이는 없으나 이자 및 배당금과 임대료의 재산소득은 봉급자가구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Ⅲ-12〉를 보면 공무원의 사무종사자가구의 경우에만 가구주의 연령이 50세 이후에 가구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제외하면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수소득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가구구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빠른 속도로 계속 증가하나 공무원의 사무종사자가구의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40대까지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가구주가 50세 이상이 되면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가구와 임시 및 일용노무자가구는 가구주의 근로소득 증가가 30대에도 크지 않으며 가구주가 40대에 이르게 되면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공무원가구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년 퇴임시까지 승진과 호봉승급에 의해 가구주의 소득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무원의 사무종사자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30대와 40대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공무원가구주보다 더 많은 근로소득을 얻지만 신분보장이 철저하지 못하여 정년전에 조기퇴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50대 이후에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로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가구와 임시 및 일용노무자가구의 가구주는 육체적인 근로능력이 40대부터 감소하기 때문에 40대부터 가구주의 근로소득도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가구는 50대 이후부터, 임시 및 일용노무자는 40대부터 가구주의 소득이 20대의 소득보다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가구주의 40~50대의 나이는 자녀의 교육 및 결혼 등으로 가계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인

〈표Ⅲ-11〉 가구구분별 소득구조(1989)

(단위: 천원, %)

소 목	근로자가구		
	총액	봉급자	노무자
	804.9(100.0)	1046.7(100.0)	658.4(100.0)
근로소득	694.6 (86.3)	898.7 (85.9)	570.8 (86.7)
· 가구주	595.2 (73.9)	802.6 (76.7)	469.4 (71.3)
· 기타가구원	99.4 (12.4)	96.7 (9.2)	101.4 (15.4)
사업 및 부업소득	19.9 (2.5)	25.2 (2.4)	19.7 (2.5)
기타소득	90.4 (11.2)	122.8 (11.7)	70.9 (10.8)
· 이자 및 배당금	7.4 (0.9)	11.7 (1.1)	4.9 (0.7)
· 임대료	15.1 (1.9)	21.7 (2.1)	11.0 (1.7)
· 사회보장 수혜	2.9 (0.4)	4.1 (0.4)	2.1 (0.3)
· 수증 및 보조	23.0 (2.9)	30.5 (2.9)	18.4 (2.8)
· 기 타	42.1 (5.2)	54.8 (5.2)	34.4 (5.2)

주: ()안의 숫자는 소득에 대한 구성비임.

대 이 시점에 노무자가구의 가구주 근로소득이 20대 수준이하로 감소하고 공무원의 사무종사자도 50대 이후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이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고령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와 직업안정보장 등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Ⅲ-12〉 가구구분별 가구주의 연령계층별 소득증가 현황(1989)

(29세이하 = 100.0)

		20세	30~	40~	50세
		이하	39세	49세	이상
공무원	가구소득	100.0	117.7	151.7	185.1
	가구주소득	100.0	145.9	193.6	215.5
공무원외 사무종사자	가구소득	100.0	134.5	177.1	167.5
	가구주소득	100.0	168.8	235.4	178.9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	가구소득	100.0	108.7	118.0	127.9
	가구주소득	100.0	119.9	116.7	96.0
일시 및 일용노무자	가구소득	100.0	106.5	124.7	133.9
	가구주소득	100.0	110.2	98.9	84.4

바. 주거형태별 소득구조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구조를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표Ⅲ-1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가га구의 소득이 가장 높고 월세가구의 소득이 가장 낮다. 전세가구의 소득은 자가га구의 71.6%, 월세가구의 소득은 자가га구의 61.8%로서 무주택가구와 자가소유가구간의 소득격차가 큰 편이다.

자가가구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전·월세가구에 비하여 다소 낮은 반면에 이자 및 배당금, 임대료 등이 재산소득의 비중은 전·월세가구보다 높으며, 월세가구는 사업 및 부업소득의 비중이 다른 가구에 비하여 높은 것이 특징이다.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자가가구가 가장 높고 월세가구가 가장 낮으나 그 비중에 있어서는 전세가구가 가장 높다.

<표Ⅲ-13> 주거형태별 소득구조(1989)

(단위: 천원, %)

	자 가	전 세	월 세
소 득	984.7(100.0)	704.8(100.0)	608.8(100.0)
근로소득	835.8 (84.9)	620.0 (88.0)	524.3 (86.1)
· 가구주	713.1 (72.4)	535.6 (76.0)	433.7 (71.2)
· 기타가구원	122.7 (12.5)	84.4 (12.0)	90.6 (14.9)
사업 및 부업소득	21.6 (2.2)	16.7 (2.4)	23.7 (3.9)
기타소득	127.3 (12.9)	68.1 (9.6)	60.7 (10.0)
· 이자 및 배당금	11.5 (1.2)	5.7 (0.8)	2.1 (0.3)
· 임대료	32.5 (3.3)	4.1 (0.6)	2.0 (0.3)
· 사회보장수혜	5.9 (0.6)	0.7 (0.1)	0.9 (0.1)
· 수증 및 보조	25.0 (2.5)	20.1 (2.9)	25.6 (4.2)
· 기 타	52.4 (5.3)	37.5 (5.3)	30.2 (5.0)

주: ()안의 숫자는 소득에 대한 구성비입.

주석 1) Le Grand, J. The Strategy of Equality, Aller & Unwin, London, 1982(Ken Judge, “The British Welfare State in Transition” , Modern Welfare States, R. Friedmann, N. Gilbert & M. Sherer(ed.)pp. 1~43에서 재인용)

주석 2) Morris, Robert, “Rethinking Welfare in the United States: The Welfare State in Transition” , Modern Welfare States, R. Friedmann, N. Gilbert, & M. Sherer(ed.), 1987. pp. 83~109.

주석 3) 우리나라는 상위 20% 소득계층이 하위 20% 소득계층보다 사회보장수혜금액이 8.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보장수혜 항목은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가 13.458%나 되어 소득항목 중에서 표본오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표본오차가 큰 것은 제 I 장에서 살펴 본 도시가계 조사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서 수입·지출의 내역을 세분류할 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므로 숫자의 단순비교는 신중을 요한다.

3. 其他收入構造

도시가계연보에서 총수입은 소득, 기타수입 및 전기이월금으로 구성되는데, 기타수입은 소득 이외의 수입으로서 재산상태에는 실질상의 증감이 없이 재산상의 형태가 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현금수입을 말한다. 1989년 현재 도시근로자가구의 총수입은 월평균 135만원으로서 이 중 소득이 59.2%인 80만원, 기타수입이 29.3%인 40만원, 전기이월금이 11.0%인 15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기타수입은 저금 찾은 금액, 계탄 돈, 빌린 돈, 월부 및 외상과 그 이외의 유가증권매각, 재산매각, 보험탄 금액, 빌려준 돈 받음 등의 기타항목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표Ⅲ-1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금 찾은 금액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빌린돈 順이다.

봉급자가구와 노무자가구를 비교해 보면 총수입 중 소득의 비율은 봉급자가구가 낮고 기타수입의 비중은 노무자가구가 높다. 그러나 금액면에서는 봉급자가구가 월등히 높다. 기타수입 항목 중 저금찾은 금액은 금액면에서나 구성비면에서나 모두 봉급자가구가 더 많고 계탄 금액은 노무자가구가 금액면에서나 구성비면에서나 모두 봉급자가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저축수단으로서 노무자가구는 상대적으로 계를 많이 이용하고 봉급자가구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월부 및 외상의 경우 금액면에서는 봉급자가구가 많으나 비율면에서는 노무자가구가 높게 나타나 있다.

<표Ⅲ-14> 근로자가구의 기타수입구조(1989)

(단위: 천원, %)

	근로자가구		
		봉급자	노무자
총수입	1348.7(100.0)	1820.2(100.0)	1063.0(100.0)
소득	804.9 (59.2)	1046.7(57.5)	658.4 (61.9)
기타수입	395.2 (29.3)	594.0 (32.6)	274.7 (25.8)
· 저금찾은돈	236.3 (17.5)	358.3 (19.7)	146.1 (13.7)
· 계탄돈	12.8 (0.9)	12.7 (0.7)	12.9 (1.2)
· 빌린돈	71.3 (5.3)	99.6 (5.5)	54.1 (5.1)
· 월부 및 외상	22.1 (1.6)	28.1 (1.5)	19.4 (1.8)
· 기타	52.1 (3.9)	68.4 (3.8)	42.2 (4.0)
전기이월금	148.6 (11.0)	179.4 (9.9)	129.9 (12.2)

주: ()안의 숫자는 소득에 대한 구성비입.

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도시가계연보』, 1989.

IV. 都市勤勞者家口의 支出構造

1. 概觀

도시가계조사에서 총지출은 가계지출, 기타지출 및 기말현금잔고를 분류되고 가계지출은 다시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는 데 드는 소비지출과 그 외의 지출인 비소비지출로 구분되며 소비지출은 다시 9개 費目으로 세분된다. 1982년과 1989년의 총지출에 대한 지출항목별 구성비를 비교하여 보면 <표Ⅳ-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지출 비중이 1982년의 51.9%에서

1989년에는 41.6%로 크게 감소함에 따라 가계지출의 구성비는 1982년의 55.5%에서 1989년에는 46.8%로 크게 감소한 반면에 가계지출 이외의 기타지출은 29.2%에서 41.9%로 크게 증가하였다. 기타지출은 저금, 유가증권 구입, 재산구입, 껌, 빌린돈 갚은 금액, 월부 및 외상갚은 금액 등 재산상태에는 실질상의 증감이 없이 재산의 형태가 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자본거래상의 지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타지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저금, 유가증권구입, 재산구입 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근로자가구를 다시 봉급자가구와 노무자가구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총지출액 중에서 가계지출의 비중은 노무자가구가 다소 높고 기타지출의 비중은 봉급자가구가 다소 높다. 총지출액 중에서 소비지출의 비중은 소득이 낮은 노무자가구가 높으며 비소비지출의 비중은 노무자가구가 낮다. 비소비지출은 조세, 사회보장분담금, 가계를 위하여 차입금 금액에 대한 지불이자, 타가구에 대한 송금 및 보조, 수익자부담금 등 소비지출 이외의 가계지출로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봉급자가구의 비소비지출이 높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봉급자가구나 노무자가구나 1982년 이후 비소비지출의 비중은 증가하고 소비지출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표IV-1〉 근로자가구의 총지출의 구성비 추이

(단위: %)

	평 균		봉 급 자		노 무 자	
	1982	1989	1982	1989	1982	1989
총 지 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계지출	55.5	46.8	54.0	46.3	56.7	47.3
· 소비지출	51.9	41.6	49.0	39.9	54.2	43.5
· 비소비지출	3.5	5.2	5.0	6.4	2.5	3.8
기타지출	29.2	41.9	30.2	43.8	28.4	39.9
기말현금잔고	15.3	11.3	15.9	9.9	14.9	12.8

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2. 都市勤勞者家口의 消費支出構造

가. 소비지출구조의 개관

1963년부터 1981년까지는 소비지출을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및 잡비 등 5대비목으로 구분하였으나 1982년 이후에는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 및 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및 기타 소비지출의 9대비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거비의 내용에 있어서도 1981년까지는 월세, 주택설비수리비 등 직접적인 주거비용뿐만 아니라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자가 및 전세평가액까지 포함하였으나 1982년부터는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별도의 비목으로 구분하고 있고 자가 및 전세평가액은 총지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시계열적인 비목구성비의 비교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표IV-2〉에 의하면 시계열적인 가구구분별 상대적인 소비지출 수준이 나타나 있다. 표에 의하면 자영업주, 개인 및 법인경영자, 자유업자 등 근로자외가구의 소비지출 수준이 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보다 10~15% 정도 더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의 소비지출 수준의 차는 1985년 이후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도시가계조사에서 제외되고 있는 근로자외가구의 평균적인 소득 및 수입이 근로자가구의 소득 및 수입보다 많으며 그 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근로자가구 중 노무자가구의 평균소비지출 수준이 봉급자가구의 63% 수준으로서 그 차는 70년대 이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 <표Ⅲ-3>의 소득의 상대적인 비교와 <표Ⅳ-2>의 소비지출의 상대적인 비교를 대비해 보면 봉급자가구와 노무자가구간의 지출수준의 격차는 소득수준의 격차보다는 다소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Ⅳ-2> 가구구분별 소비지출수준의 상대비교

(단위: %, 근로자가구 = 100.0)

	1963	1970	1980	1982	1985	1988	1989
근로자가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봉급자	141.4	118.3	139.4	134.6	133.3	130.0	129.1
· 노무자	73.6	78.9	82.7	84.4	81.0	82.1	82.4
	(52.1)	(66.7)	(62.7)	(62.7)	(60.8)	(63.2)	(63.8)
근로자외 가구	109.4	112.1	110.8	113.3	111.4	114.4	117.1

주: ()안의 숫자는 봉급자가구 소비지출수준에 대한 노무자가구 소비지출수준의 비율임.

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1989년 현재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5분위별 소비지출구조를 경제기획원 조사 통계국에서 분류하고 있는 9大費目別로 분류하면 <표Ⅳ-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각 비목별 소비지출수준도 증가하지만 그 구성비에 있어서는 비목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및 보건의료비는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에 피복 및 신발비,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및 기타 소비지출은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구성비는 소득수준과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Ⅳ-3〉 근로자가구의 소득 5분위별 소비지출구조(1989)

(단위: 천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비지출	316.7 (100.0)	403.5 (100.0)	500.1 (100.0)	622.8 (100.0)	964.8 (100.0)
식료품	115.6 (36.5)	145.9 (36.2)	170.9 (34.2)	201.2 (32.3)	276.2 (28.6)
주 거	20.8 (6.6)	19.4 (4.8)	22.2 (4.4)	21.0 (3.4)	34.2 (3.5)
광열·수도	19.1 (6.0)	22.2 (5.5)	24.3 (4.9)	28.0 (4.5)	35.5 (3.7)
가구집기·가사 용품	17.4 (5.5)	22.3 (5.5)	28.8 (5.8)	34.3 (5.5)	63.1 (6.5)
피복 및 신발	23.6 (7.4)	32.7 (8.1)	41.8 (8.4)	54.1 (8.9)	89.4 (9.3)
보건·의료	19.8 (6.2)	23.0 (5.7)	27.6 (5.5)	35.9 (5.8)	47.8 (5.0)
교육·교양· 오락	30.8 (9.7)	40.1 (9.9)	58.1 (11.6)	79.9 (12.8)	127.3 (13.2)
교통·통신	22.2 (7.0)	29.3 (7.3)	35.1 (7.0)	50.1 (8.0)	93.7 (9.7)
기타소비지출	47.4 (15.0)	68.4 (17.0)	91.4 (18.3)	118.5 (19.0)	197.6 (20.5)

주: ()안의 숫자는 소비지출에 대한 구성비임.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구조를 가구주의 교육정도에 따라 비교해 보면 〈표Ⅳ-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주의 학력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및 보건·의료비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피복 및 신발비,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및 기타 소비지출의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비중은 가구주의 교육수준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살펴본 소득 5분위별 소비지출구조와 같은바, 이는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가계의 가구구분별 소비지출구조를 보면 〈표Ⅳ-5〉와 같다. 먼저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를 비교해 보면 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 수준이 근로자외가구보다 낮게 나타나 있는바, 이는 근로자가구의 소득이 근로자외가구보다 낮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 그리고 봉급자가구와 노무자가구간의 소득 및 소비지출 수준의 차이는 소비지출구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앞서 살펴 본 소득 5분위별 소비지출구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소비지출 중에서 차지하는 식료품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등의 비중은 근로자가구가 근로자외가구보다, 그리고 노무자가구가 봉급자가구보다 높으며 주거비 및 교육·교양·오락비의 비중은 이와는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구조를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표Ⅳ-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지출 수준은 자가자가구가 가장 높고 월세가가가 가장 낮다.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교육·교양·오락비

및 교통·통신비의 구성비는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자가가가 가장 높고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월세가가가 가장 낮다. 그러나 식료품비의 구성비는 전세가가가 가장 높게 나타나 있는 점이 특이하며, 자가 및 전세가가의 주거비가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은 <표IV-6>의 주거비에는 자가 및 전세평가액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IV-4> 가구주의 교육정도별 소비지출구조(1989)

(단위: 천원, %)

	중졸이하	고 졸	전문대이상
소비지출	461.7 (100.0)	512.5 (100.0)	768.7 (100.0)
식료품	159.4 (34.5)	170.5 (33.3)	229.5 (29.9)
주 거	22.5 (4.9)	20.9 (4.1)	29.3 (3.8)
광열·수도	23.2 (5.0)	24.5 (4.8)	31.3 (4.1)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25.8 (5.6)	31.3 (6.1)	45.3 (5.9)
피복 및 신발	38.1 (8.3)	44.6 (8.7)	67.1 (8.7)
보건·의료	26.3 (5.7)	29.3 (5.7)	38.9 (5.1)
교육·교양· 오락	55.3 (12.0)	56.3 (11.0)	101.5 (13.2)
교통·통신	32.5 (7.0)	38.0 (7.4)	76.9 (10.0)
기타소비지출	78.7 (17.0)	97.1 (18.9)	148.8 (19.4)

주: ()안의 숫자는 소비지출에 대한 구성비임.

〈표Ⅳ-5〉 가구구분별 소비지출구조(1989)

(단위: 천원, %)

				근로자의가구
	근로자가구	농업자	노부자	
소비지출	561.7 (100.0)	725.1 (100.0)	462.6 (100.0)	657.8 (100.0)
식료품	182.0 (32.4)	219.1 (30.2)	159.5 (34.5)	204.3 (31.1)
주거	23.5 (4.2)	26.7 (3.7)	21.5 (4.6)	31.5 (4.8)
광열·수도	25.8 (4.6)	30.6 (4.2)	22.9 (5.0)	31.0 (4.7)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33.2 (5.9)	42.9 (5.9)	27.3 (5.9)	36.6 (5.6)
피복 및 신발	48.3 (8.6)	63.8 (8.8)	39.0 (8.4)	54.5 (8.3)
보건·의료	30.8 (5.5)	37.8 (5.2)	26.6 (5.8)	35.2 (5.4)
교육·교양· 오락	67.3 (12.0)	94.2 (13.0)	50.9 (11.0)	91.2 (13.9)
교통·통신	46.1 (8.2)	68.2 (9.4)	32.7 (7.1)	55.3 (8.4)
기타소비지출	104.7 (18.6)	141.6 (19.5)	82.2 (17.8)	118.3 (18.0)

주: ()안의 숫자는 소비지출에 대한 구성비임.

〈표Ⅳ-6〉 주거형태별 소비지출구조(1989)

(단위: 천원, %)

	자 가	전 세	월 세
소비지출	716.1 (100.0)	450.2 (100.0)	443.3 (100.0)
식료품	220.6 (30.8)	159.4 (35.4)	143.6 (32.4)
주 거	24.7 (3.4)	3.5 (0.8)	55.4 (12.5)
광열·수도	31.5 (4.4)	22.6 (5.0)	19.9 (4.5)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43.8 (6.1)	26.5 (5.9)	24.2 (5.5)
피복 및 신발	59.6 (8.3)	40.2 (8.9)	38.7 (8.7)
보건·의료	37.6 (5.3)	28.1 (6.2)	21.4 (4.8)
교육·교양· 오락	100.9 (14.1)	44.8 (10.0)	39.9 (9.0)
교통·통신	61.6 (8.6)	35.9 (8.0)	28.6 (6.5)
기타소비지출	135.8 (19.0)	89.3 (19.8)	71.5 (16.1)

주: ()안의 숫자는 소비지출에 대한 구성비임.

가구주의 연령계층별 소비지출구조는 〈표Ⅳ-7〉에 나타나 있다. 대부분의 비목은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지출액이 증가하거나 50세 이후에 보합을 이루는 데 반하여 교육·교양·오락비와 교통·통신비는 40대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다. 또한 비목별 구성비는 가구주의 연령과 일정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에 따른 소비지출구조는 〈표Ⅳ-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비목 공히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소비지출액도 많아지지만 가구원수에 따른 가구당 소비지출의 증가율은 가구원수에 비례하지 않고 가구원수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구의 소비지출은 기본적인 소비규모를 필요로 하므로 1인당 소비비용이 遞減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거비는 가구원수 증가에 따른 소비지출비용의 증가가 가장 낮게 나타나 있는데, 이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가구당 취업인원수가 많고 가구주 평균연령이 높아 생활기반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자기집을 소유한 가구가 많기 때문에 월세 지출액이 감소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교육·교양·오락비는 가구원수의 증가율보다 소비지출의 증가가 더 높게 나타나 있는데, 이는 가구원이 많은 가구일수록 취학중인 자녀가 많고 따라서 교육비 지출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비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서는 교육·교양·오락비의 경우에만 가구원수 증가에 따라 그 비중도 증가할 뿐 기타의 비목의 경우에는 가구원수와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7〉 가구주 연령계층별 소비지출구조 (1989)

(단위: 천원, %)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세이상
소비지출	458.1 (100.0)	523.4 (100.0)	666.3 (100.0)	684.8 (100.0)
식료품	149.9 (32.7)	175.8 (33.6)	208.6 (31.3)	210.2 (30.7)
주거	20.4 (4.5)	22.7 (4.3)	25.4 (3.8)	28.3 (4.1)
광열·수도	21.0 (4.6)	24.5 (4.7)	30.5 (4.6)	30.3 (4.4)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31.8 (6.9)	32.3 (6.2)	35.2 (5.3)	35.0 (5.1)
피복 및 신발	42.5 (9.3)	44.6 (8.5)	54.5 (8.2)	60.9 (8.9)
보건·의료	24.8 (5.4)	29.4 (5.6)	36.3 (5.4)	36.2 (5.3)
교육·교양· 오락	39.6 (8.6)	53.8 (10.3)	104.8 (15.7)	91.4 (13.3)
교통·통신	37.6 (8.2)	43.2 (8.3)	55.6 (8.3)	52.8 (7.7)
기타소비지출	90.5 (19.8)	97.1 (18.6)	115.3 (17.3)	139.7 (20.4)

주: ()안의 숫자는 소비지출에 대한 구성비임.

〈표IV-8〉 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소비지출구조 (1989)

(단위: 천원, %)

	2人	3人	4人	5人	6人이상
소비지출	368.1 (100.0)	470.1 (100.0)	576.6 (100.0)	663.4 (100.0)	734.8 (100.0)
식료품	114.5 (31.1)	152.1 (32.4)	186.7 (32.4)	217.6 (32.8)	239.0 (32.5)
주거	25.6 (7.0)	21.4 (4.6)	22.7 (3.9)	24.6 (3.7)	27.2 (3.7)
광열·수도	16.7 (4.5)	21.9 (4.7)	26.1 (4.5)	31.0 (4.7)	34.2 (4.7)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23.3 (6.3)	30.4 (6.5)	34.5 (6.0)	37.1 (5.6)	37.6 (5.1)
피복 및 신발	33.6 (9.1)	40.2 (8.6)	49.9 (8.7)	56.9 (8.6)	61.2 (8.3)
보건·의료	17.6 (4.8)	28.6 (6.1)	30.9 (5.4)	36.8 (5.5)	38.3 (5.2)
교육·교양· 오락	27.5 (7.5)	40.4 (8.6)	70.1 (12.2)	96.0 (14.5)	108.7 (14.8)
교통·통신	28.4 (7.7)	42.1 (9.0)	50.4 (8.7)	46.2 (7.0)	56.6 (7.7)
기타소비지출	80.8 (22.0)	93.0 (19.8)	105.2 (18.2)	117.2 (17.7)	131.9 (18.0)

주: ()안의 숫자는 소비지출에 대한 구성비임.

나. 식료품비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Engel)은 소득의 증가에 따라 가계의 소비지출액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 즉 엥겔계수(Engel coefficient)는 감소한다고 하였다(엥겔의 제1법칙).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소비지출액 중 식료품비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표IV-9〉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 모두 소득증가에 따라 식료품비의 비중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엥겔의 제1법칙을 뒷받침하고 있다.

소비지출액 중 식료품비의 비중을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양자간의 소득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자가구 내에서는 봉급자가구의 식료품비 구성비가 노무자가구보다 매년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봉급자가구의 소득이 노무자가구의 소득보다 월등히 높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IV-9〉 소비지출액 중 식료품비의 구성비 추이

(단위: %, 소비지출액 = 100)

	1963	1970	1980	1985	1989
근로자가구	61.3	46.5	38.6	36.8	32.4
농업자	57.6	44.4	34.4	33.8	30.2
노무자	65.3	49.9	41.8	39.7	34.5
근로자외가구	60.2	46.8	38.4	37.0	31.1

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한편 소비지출액 중 식료품비의 비율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표IV-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소득 10분위마다 시계열적인 소득증가에 따라 식료품비의 구성비는 감소할 뿐만 아니라 횡단면적으로 동일 시점에서 볼 때에도 대체로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식료품비의 구성비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식료품비가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는바, 이제 식료품비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식료품비의 구성에 있어서도 매우 흥미있는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표IV-10〉 근로자 가구의 소득 10분위별 소비지출액 중 식료품비의 구성비

(단위: %)

	1982	1985	1989
1 분위	46.3	42.7	36.5
2 분위	46.4	42.2	36.5
3 분위	44.5	42.0	36.7
4 분위	44.6	41.8	35.7
5 분위	43.4	40.0	35.2
6 분위	43.3	39.4	33.2
7 분위	41.6	38.4	33.4
8 분위	40.5	36.6	31.4
9 분위	38.2	34.6	30.3
10 분위	33.9	30.0	27.5
평균	40.7	36.8	32.4

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먼저 〈표IV-1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63년에는 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主食費의 비중이 63.0%, 副食費의 비중이 32.5%로서 식생활이 곡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기호식품 및 外食에 대한 지출은 극히 미미하였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주식비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고 부식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9년 현재 주식비는 식료품비의 20.7%에

불과하나 부식비의 식료품비에 대한 구성비는 54.3%로서 식생활이 곡류를 중심으로 한 主食 위주에서 육류, 유란, 어개류, 채소, 과일 등을 중심으로 한 副食 위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기호식품의 구성비는 1963년의 2.4%에서 1989년에는 4.6%로 증가했으며, 외식비의 비중도 1963년에는 식료품비의 2.1%에서 1989년에는 20.4%로 급증하였다. 이와 같이 경제발전 에 따른 소득의 증가는 도시근로자의 식생활수준을 크게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득수준의 향상은 가계의 소비지출에 대한 식료품비의 비중을 낮출 뿐만 아니라 주식의 비중을 낮추고 부식과 외식의 비중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표IV-11〉 근로자 가구의 식료품비의 내역별 구성비 추이 (단위: %)

	1963	1970	1980	1985	1989
식료품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식	63.0	44.1	34.5	28.5	20.7
부 식	32.5	49.0	51.5	58.7	54.3
기호식품	2.4	5.0	9.6	4.4	4.6
외식·기타	2.1	1.9	4.4	8.4	20.4

주: 주식비 = 곡류에 대한 지출

부식비 = 육류, 유란, 어개류, 채소, 해초, 과일, 유지 및 조미료, 빵 및 과자류에 대한 지출(단, 1963, 1970 및 1980년의 경우 분류체계의 상이함 때문에 과자류는 기호식품으로 분류되었음)

기호식품=음료 및 주류에 대한 지출

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1989년 현재의 도시근로자가구의 식료품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소득 5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주식비의 비중은 낮고 외식비의 비중은 높게 나타났다(표 IV-12). 그러나 부식과 기호식품비의 비중은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소득계층간의 차이는 미미하다.

1985년도 도시가계연보에 의하면 1985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24천원이며 이를 1989년도 가격으로 환산하면 508천원이 된다.¹⁾ 한편 제 III장의 〈표III-4〉에서 본 바와 같이 1989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소득5분위중 제1분위가 328천원, 제2분위가 524천원이므로 1985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은 1989년의 소득5분위중 제2분위의 평균소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표IV-12〉의 1989년도 제2분위에 속한 근로자가구의 식료품비 구성비와 〈표IV-11〉의 1985년도 도시근로자가구의 식료품비 구성비를 비교해 보면 주식비와 부식비의 구성비는 1985년의 전체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가 다소 높지만 외식비는 1989년의 제2분위 소득계층가구가 8.1%포인트나 더 높다. 특히 1989년의 제1분위 소득계층가구도 식료품비중 외식비의 비중이 14.4%나 되어 1985년의 평균외식비의 비중 8.4%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표IV-12〉에서 1985년과 1989년의 소득5분위별 외식비 비중을 비교해 보면 1989년의 제1분위 계층이 1985년의 제5분위중 계층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외식비에 대한 지출이 자기의 절대소득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소비지출행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1989년에 있었던 소위 「過消費」 분위기가 저소득계층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듀젠베리」(Dusenberry)는 개인의 소비는 그의 절대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높은 소득수준에 의해 끊임없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각 개인의 소비행태는 자기의 소득수준에만 의존하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접촉하는 사회의 평균적 소비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소비의 展示效果(demonstration effect)를 주장한 바 있는데²⁾ 1989년의 저소득계층의

외식비 구성비가 1985년

〈표IV-12〉 소득 5분위별 식료품비의 구성(1989)

(단위: 천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비지출	316.7	403.5	500.1	622.8	964.8
식료품비	115.6	145.9	170.9	201.2	276.2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식	29.2	33.6	36.7	41.8	47.0
	(25.3)	(23.0)	(21.5)	(20.8)	(17.0)
- 부식	64.1	81.2	93.8	109.0	146.2
	(55.4)	(55.7)	(54.9)	(54.2)	(52.9)
- 기호식품	5.7	7.0	7.8	9.2	11.9
	(4.9)	(4.8)	(4.6)	(4.5)	(4.3)
- 외식 및 기타	16.5	24.0	32.5	41.2	71.1
	(14.4)	(16.5)	(19.0)	(20.5)	(25.8)
	(4.8)*	(6.7)*	(7.4)*	(8.6)*	(10.8)*

주: 1) ()안의 숫자는 식료품비에 대한 구성비임.

2) * 표시는 1985년도 외식 및 기타의 식료품비에 대한 구성비임.

의 고소득계층의 외식비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1989년에 사회문제화 되었던 과소비현상의 한 단면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듀젠베리」가 주장하는 소비의 相互依存性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겠다.

가구의 교육정도에 따른 식료품비 지출구조를 보면 〈표IV-1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가구의 학력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식료품비 중 주식비의 비중은 낮은 반면 부식비와 외식비의 비중은 높다. 그러나 기호식품비의 구성비는 학력수준과는 관계가 없다.

식료품비의 지출구조를 가구의 연령계층별로 보면 주식 및 부식비의 금액과 비중 모두 40대까지는 증가하다가 50대 이후에 감소하고 외식비의 비중은 29세 이하에서 가장 높았다가 그 이후 40대까지는 감소하지만 50세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표 IV-14). 또한 기호식품비의 비중은 30대까지는 높지만 40대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다.

가구원수에 따른 식료품비의 지출구조를 보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주식비의 비중이 높고 외식비와 기호식품의 비중은 낮아지나 부식비의 비중은 가구원수와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5).

가구구분에 따른 식료품비의 구성내역을 〈표IV-16〉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가구가 근로자외가구에 비하여 외식비의 비중은 높고 부식비의 비중은 낮다. 그러나 주식비와 기호식품의 구성비는 양자간에 차이가 거의 없다. 소득이 낮을수록 외식비의 비중은 낮은 것이 일반적이는데 근로자가구의 외식비 비중이 근로자외가구의 외식비 비중보다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하겠다. 근로자가구내에서는 봉급자가구가 노무자가구에 비하여 주식비의 비중이 낮고 부식비와 외식비의 비중은 높다.

주거형태에 따른 식료품비의 지출구조를 보면 〈표IV-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액면에서는 모든 항목마다 자가가가가 가장 많고 월세가가가 가장 적지만 구성비면에서 보면 주식비의 구성비는 자가가가가 가장 낮고 월세가가가 가장 높으며 부식비의 구성비는 이와 반대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 차는 크지 않다. 특히 외식비의 비중은 주거형태와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전월세가구의 외식비 비중이 자가가구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앞서 언급한 소비의 展示效果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IV-13〉 가구주의 교육정도별 식료품비의 구성 (1989)

(단위: 천원, %)

	중졸이하	고 졸	전문대이상
소비지출	461.7	512.5	768.7
식료품비	159.4 (100.0)	170.5 (100.0)	229.5 (100.0)
· 주 식	42.0 (26.3)	35.6 (20.9)	36.4 (15.9)
· 부 식	84.1 (52.8)	93.1 (54.6)	126.7 (55.2)
· 기호식품	7.1 (4.5)	8.0 (4.7)	10.4 (4.5)
· 외식 및 기타	26.1 (16.4)	33.8 (19.8)	56.0 (24.4)

주: ()안의 숫자는 식료품비에 대한 구성비입.

〈표IV-14〉 가구주 연령계층별 식료품비의 구성 (1989)

(단위: 천원, %)

	29세이하	30 ~39세	40~49세	50세이상
소비지출	458.1	523.4	666.3	684.8
식료품비	149.9 (100.0)	175.8 (100.0)	208.6 (100.0)	210.2 (100.0)
· 주 식	28.5 (19.0)	34.6 (19.7)	47.1 (22.6)	46.8 (22.3)
· 부 식	78.1 (52.1)	97.0 (55.2)	115.1 (55.2)	111.1 (52.9)
· 기호식품	7.5 (5.0)	8.9 (5.1)	8.1 (3.9)	8.2 (3.9)
· 외식 및 기타	35.8 (23.9)	35.3 (20.1)	38.3 (18.4)	44.2 (21.0)

주: ()안의 숫자는 식료품비에 대한 구성비입.

〈표IV-15〉 가구원수별 식료품비의 구성 (1989)

(단위: 천원, %)

	2 인	3 인	4 인	5 인	6인이상
소비지출	368.1	470.1	576.6	663.4	734.8
식료품비	114.5	162.1	186.7	217.6	239.0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 식	19.6	27.6	37.9	47.7	60.8
	(17.1)	(18.1)	(20.3)	(21.9)	(25.4)
· 부 식	57.7	83.0	103.2	118.3	126.8
	(50.4)	(54.6)	(55.3)	(54.4)	(53.1)
· 기호식품	5.7	7.9	8.8	8.9	9.0
	(5.0)	(5.2)	(4.7)	(4.1)	(3.8)
· 외식 및 기타	31.4	33.5	36.8	42.7	42.4
	(27.4)	(22.0)	(19.7)	(19.6)	(17.7)

주: ()안의 숫자는 식료품비에 대한 구성비임.

〈표IV-16〉 가구구분별 식료품비의 구성(1989)

(단위: 천원, %)

	근로자가구	불급자	노부자	근로자의가구
소비지출	561.7	725.1	462.6	657.8
식료품비	182.0	219.1	159.5	204.3
	(100.0)	(100.0)	(100.0)	(100.0)
· 주 식	37.7	37.2	38.0	40.9
	(20.7)	(17.0)	(23.8)	(20.0)
· 부 식	99.0	120.7	85.6	117.0
	(54.3)	(55.0)	(53.7)	(57.3)
· 기호식품	8.3	9.8	7.4	9.3
	(4.6)	(4.5)	(4.7)	(4.6)
· 외식 및 기타	37.1	51.4	28.4	37.1
	(20.4)	(23.5)	(17.8)	(18.1)

주: ()안의 숫자는 식료품비에 대한 구성비임.

〈표IV-17〉 주거형태별 식료품비의 구성 (1989)

(단위: 천원, %)

	자 가	전 세	월 세
소비지출	716.1	450.2	443.3
식료품비	220.6	159.4	143.6
	(100.0)	(100.0)	(100.0)
· 주 식	44.6	33.2	32.3
	(20.2)	(20.8)	(22.5)
· 부 식	121.3	86.6	74.4
	(55.0)	(54.3)	(51.8)
· 기초식품	9.6	7.8	6.8
	(4.4)	(4.9)	(4.7)
· 외식 및 기타	45.2	31.8	30.2
	(20.5)	(19.9)	(21.0)

주: ()안의 숫자는 식료품비에 대한 구성비일.

다. 주거관련비용

독일의 통계학자 「앵겔」(Engel)은 벨기에 근로자의 가계조사에 관한 연구에서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주거비 및 광열비의 비율은 거의 일정하다는 「앵겔의 제3법칙」을 발견하였다. 한편 독일의 「슈바베」(Schwbae)는 베를린 시민에 대한 소득액과 집세에 대한 조사자료로부터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집세(주거비)를 지불한다는 「슈바베의 법칙」을 발견하였다.

우리나라의 도시가계조사에서는 주거비를 1982년 이후에는 월세, 주택설비수리비 및 아파트 관리비 등 기타 주거비의 합계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방세, 자가 및 전세평가액 및 기타 주거비의 합계로 정의하여 파악하였다. 그러나 주거관련비용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월세, 주택설비수리비, 기타주거비로 구성되는 狹義의 주거비(주거비 I)와 자가 및 전세평가액까지 포함한 廣義의 주거비(주거비 II) 및 광열·수도비까지 포함한 最廣義의 주거비(주거비 III)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자가 및 전세평가액을 주거비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이를 소득 및 가계지출에도 동시에 포함시켜 주거비의 비율을 구해야 한다. 자가 및 전세평가액은 주택이라는 실물자산과 전세금이라는 금융자산의 소유로부터 발생하는 歸屬所得(imputed income)으로서 언제든지 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다. 자가 및 전세평가액은 자가 및 전세가구가 월세에 살 경우에 지불해야 할 월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월세가구에 비해 평가액만큼 주거비로 지불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자가 및 전세평가액을 주거비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이를 소득에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자가 및 전세평가액은 주택이라는 실물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임대소득과 전세금이라는 금융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자소득에 대한 機會費用(opportunity cost)이라는 측면에서 자가 및 전세평가액을 주거비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이를 가계지출에도 포함시켜야 한다.

1982년 이후의 주거비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표IV-18〉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2년 이후 소득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주거비 I의 비중은 거의 일정하여 「앵겔의 제3법칙」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비 II 및 주거비 III의 비중은 1985년에 크게 증가한 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앵겔의 제3법칙」과는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IV-18〉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주거관련비용의 변화 추이

(단위: %)

	1982	1985	1987	1989
주거비 I	4.0	4.2	4.0	3.7
주거비 II	18.0	21.3	20.4	19.8
주거비 III	24.2	26.8	25.1	23.2

주: 주거비 I = 월세 + 주택설비수리비 + 기타 주거비

주거비 II = 주거비 I + 자가 및 전세평가액

주거비 III = 주거비 I + 주거비 II + 광열·수도비

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제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한편 1989년의 소득 5분위별 주거관련비용의 비율은 〈표IV-19〉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소득 및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주거비의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슈바베의 법칙」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주거비의 비율이 거의 일정하다는 「앵겔의 제3법칙」은 주거비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할 때 타당한 반면에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주거비의 비중이 높다는 「슈바베의 법칙」은 일정시점에서 주거비를 횡단면적으로 소득계층별로 비교할 때 타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표IV-19〉를 보면 매월 직접 지불하는 월세를 중심으로 한 주거비 I의 비율만 보면 소득의 2~6%로서 그다지 높지 않지만 자가 및 전세평가액을 포함한 주거비 II의 비율은 하위 20% 소득계층의 경우 소득의 22.1% 및 가계지출의 21.8%를, 상위 20% 소득계층도 소득의 13.4% 및 가계지출의 18.0%를 점하고 있다. 또한 광열·수도비까지 포함한 주거비 III의 비율은 하위 20% 소득계층의 경우 소득의 27.0% 및 가계지출의 26.6%를, 상위 20% 소득계층의 경우에도 소득의 15.4% 및 가계지출의 20.6%를 점하고 있어 주거비의 안정이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우선의 정책과제가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IV-19〉 소득 5분위별 월평균 주거관련비용(1989)

(단위: 천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 주거관련 계비용					
· 월세(A)	17.7	14.0	11.9	8.7	7.3
· 주택설비수리비(B)	2.4	4.4	8.3	9.5	20.9
· 기타주거비(C)	0.6	1.1	1.7	2.7	5.9
· 전세평가액(D)	37.4	47.7	48.1	45.4	41.9
· 자가평가액(E)	29.0	44.6	68.8	101.9	165.8
· 광열·수도비(F)	19.1	22.2	24.3	27.9	35.5
(2) 주거비의 분류					
· 주거비 I (A+B+C)	20.8	19.4	22.0	21.0	34.2
· 주거비 II (주거비 I + D+E)	87.2	111.7	138.9	168.2	241.9
· 주거비 III (주거비 II + F)	106.3	133.9	163.2	196.2	277.5
(3) 소득	328.0	523.6	680.6	899.8	1592.0
4. 가계지출	333.3	433.4	556.2	693.4	1139.7
5.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					
· 주거비 I /소득	0.063	0.037	0.032	0.023	0.021
· 주거비 II /소득	0.221	0.181	0.174	0.161	0.134
· 주거비 III /소득	0.270	0.217	0.205	0.187	0.154
(6) 가계지출대비 주거비비율					
· 주거비 I /가계지출	0.062	0.045	0.039	0.030	0.030
· 주거비 II /가계지출	0.218	0.212	0.206	0.200	0.180
· 주거비 III /가계지출	0.266	0.255	0.242	0.233	0.206

〈표IV-20〉에는 1989년도 도시근로자가계의 주거형태에 따른 주거비용이 나타나 있다. 우선 현행 도시가계조사의 분류체계에 따른 주거비 I의 경우에는 월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가 및 전세가구의 경우 주거비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주거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주거비 II 및 주거비 III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자가 및 전세평가액까지 포함한 주거비 II의 경우와 광열·수도비까지 포함한 주거비 III의 경우에는 절대금액면에서나 소득 및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나 자가가구가 가장 높고 월세가구가 가장 낮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자가가구의 경우 주거생활이 안정된 계층이므로 주거비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무주택가구인 전세가구와 월세가구라 할 수 있다. 주거비 II의 비중이 전세가구는 소득의 15.4% 및 가계지출의 20.4%를, 월세가구는 소득의 9.1% 및 가계지출의 11.6%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1988년 이후의 주택 및 전월세가가격의 폭등이 근로자 가계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으며, 주거비의 안정 없이는 근로자의 복지향상은

공허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IV-20〉 주거형태별 월평균 주거관련비용(1989)

(단위: 천원)

	자 가	전 세	월 세
(1) 주거관련 재비용			
· 월세(A)	-	-	53.8
· 주택(B)	19.8	2.0	1.4
· 기타주거비(C)	4.4	1.4	0.2
· 전세평가액(D)	-	124.0	-
· 자가평가액(E)	197.0	-	-
· 광열·수도비(F)	31.5	22.6	19.9
(2) 주거비의 분류			
· 주거비 I (A+B+C)	24.2	3.4	55.4
· 주거비 II (주거비 I +D+E)	221.7	127.5	55.4
· 주거비 III (주거비 II +F)	253.2	150.1	75.3
(3) 소득	984.7	704.8	608.8
(4) 가계지출	816.2	499.6	477.9
(5)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			
· 주거비 I /소득	0.025	0.005	0.091
· 주거비 II /소득	0.188	0.154	0.091
· 주거비 III /소득	0.214	0.181	0.124
(6) 가계지출대비 주거비비율			
· 주거비 I /가계지출	0.030	0.007	0.116
· 주거비 II /가계지출	0.219	0.204	0.116
· 주거비 III /가계지출	0.250	0.241	0.158

라. 피복비, 보건의료비 및 교통통신비

「엔겔의 제2법칙」에 의하면 피복비의 비중은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변동하지 않는다고 한다. 〈표IV-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의 피복 및 신발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 내외에서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엔겔의 제2법칙」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1989년의 피복 및 신발비를 소득 10분위별로 비교해 보면 〈표IV-22〉에서 보듯이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소비지출 중에서 차지하는 피복 및 신발비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복 및 신발비용은 시계열적으로 볼 때는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으나 일정 시점에서 횡단면적으로 볼 때에는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피복비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건의료비는 시계열적으로 볼 때나 횡단면적으로 볼 때나 소득수준과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표 IV-21 및 표 V-22). 그러나 하위소득계층과 상위소득계층간의 보건의료비의 금액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저소득계층의 보건의료기관 이용이 원활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교통통신비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시계열적으로나 횡단면적으로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IV-21 및 표 V-22), 그 중에서도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소득증가에 따라 그 비중이 감소하는 데 반하여 개인교통수단에 지출되는 비용은 소득증가에 따라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IV-21〉 소비지출에 대한 피복비, 보건의료비 및 교통통신비 비율

(단위: %)

	1982	1985	1987	1989
피복 및 신발비	8.1	7.6	7.8	8.6
보건의료비	7.1	7.7	7.5	5.5
교통통신비	6.5	6.4	6.7	8.2
(개인교통)	(0.16)	(0.44)	(0.69)	(2.87)
(공공교통)	(5.10)	(4.34)	(4.17)	(3.69)
(통신)	(1.21)	(1.59)	(1.82)	(1.66)

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표IV-22〉 소득10분위별 피복비, 보건의료비 및 교통통신비 (1989)

(단위: 천원, %)

	피복 및 신발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1분위	20.3(7.0)	18.6(6.4)	20.7(7.1)
2분위	27.0(7.9)	21.0(6.1)	23.8(6.9)
3분위	30.1(7.9)	21.7(5.7)	27.9(7.3)
4분위	35.2(8.3)	24.3(5.7)	30.7(7.2)
5분위	38.7(8.2)	26.0(5.5)	30.4(6.4)
6분위	45.0(8.5)	29.3(5.6)	39.9(7.6)
7분위	49.2(8.5)	32.1(5.6)	43.0(7.5)
8분위	59.0(8.8)	39.7(5.9)	57.1(8.5)
9분위	70.3(9.0)	44.3(5.7)	64.8(8.3)
10분위	108.5(9.4)	51.3(4.5)	122.6(10.7)

주: ()안의 숫자는 소비지출에 대한 비율임.

주석 1)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985년을 100.0으로 보았을 경우 1989년에는 119.9이다.
 주석 2) Duesenberry, J.S., *Income, Saving, and the Theory of Consumer Behavior*,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49.

마. 문화관련비용

앵겔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관련비용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한다는 「앵겔의 제4법칙」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도시가계조사에서 문화관련비용은 교육·교양·오락비와 담배·이미용·장신구·잡비 등에 대한 지출인 기타소비지출의 2가지 비목으로 대별할 수 있다. <표IV-23>에는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에 대한 문화관련비용의 연도별 구성비 추이가 나타나 있다. 표에 의하면 교육·교양·오락비의 비중 및 기타소비지출은 소득수준이 연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앵겔의 제4법칙」이 잘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타소비지출의 증가속도가 교육·교양·오락비의 증가추세를 앞지르고 있음이 특징이다. 또한 소득 10분위별로 살펴보면 <표IV-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문화관련비용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교육·교양·오락비보다는 기타소비지출의 소득탄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앵겔의 제4법칙」은 시계열적으로나 횡단면적으로나 모두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IV-23>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에 대한 문화관련비용의 비율

(단위: %)

	1982	1985	1987	1989
교육·교양·오락비	9.6	10.0	10.7	12.0
기타 소비지출	11.5	14.9	16.8	18.6
계	21.1	24.9	27.5	30.6

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표IV-24〉 근로자가구의 소득 10분위별 문화관련비용(1989)

(단위: 천원, %)

	교육·교양·오락	기타소비지출	계
1분위	27.7(9.5)	41.5(14.3)	69.2(23.8)
2분위	34.0(9.9)	53.1(15.5)	87.1(25.4)
3분위	35.4(9.3)	64.7(16.9)	100.1(26.2)
4분위	44.9(10.6)	72.2(17.0)	117.1(27.6)
5분위	56.7(12.0)	84.7(17.9)	141.4(29.9)
6분위	59.6(11.3)	98.1(18.6)	157.7(29.9)
7분위	72.7(12.6)	108.7(18.9)	181.4(31.5)
8분위	87.1(13.0)	128.3(19.2)	215.4(32.2)
9분위	104.7(13.4)	154.0(19.8)	258.7(33.2)
10분위	150.0(13.0)	241.3(21.0)	391.3(34.0)

주: ()안의 숫자는 소비지출에 대한 비율임.

3. 非消費支出構造

가계지출 중에서 생계유지에 직접 필요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지출인 소비지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비소비지출이라 하는데 각종 조세, 사회보장분담금(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각출료 등),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타가구에 대한 송금 및 보조, 벌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소비지출의 항목별 구성비가 〈표IV-25〉에 나타나 있다. 표에 의하면 비소비지출의 비중은 1982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금액면에서나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나 근로자가구가 근로자외가구보다 높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가구가 근로자외가구보다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지출액은 1982년의 경우 근로자외가구는 근로자가구보다 1.13배 많으므로 소득차이도 이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당해년도의 조세부담에 있어서는 근로자가구가 근로자외가구보다 1.6배나 많이 부담하였으며, 사회보장분담금은 17배나 많이 부담하였다. 또 1989년의 경우에도 소비지출액은 근로자외가구가 1.12배 많으나 조세부담은 근로자가구가 근로자외가구보다 2.3배, 사회보장분담금은 3배나 많이 부담하고 있다. 조세부담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도 근로자가구는 1982년의 2.0%에서 1989년에는 3.9%로 증가하였으나 근로자외가구는 1.2%에서 1.5%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사회보장분담금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근로자가구는 1982년에 1.3%에서 1989년에는 2.4%로 증가하였으나 근로자외가구의 경우 1989년에도 0.7%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의료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가 근로자 중심으로 출발하여 자영업자 등 근로자 이외의 경우에까지 점차 확대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회보장분담금의 부담에 있어서 근로자가구가 근로자외가구보다 높다는 점은 당연하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외가구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가구가 훨씬 많은 조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부담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소득분배 측면이나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근로소득은 稅源이 완전히 노출되는 데 반하여 비근로소득은 세원포착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重課稅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향후 조세 및 소득분배정책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점으로 생각된다.

한편 비소비지출의 항목별 구성을 근로자가구내에서 봉급자가구와 노무자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IV-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봉급자가구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소비지출의 비율 및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 있다. <표IV-26> 과 제3장의 <표III-11> 을 비교해 보면 봉급자가구는 노무자가구에 비해 사회보장분담금을 더 많이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수혜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IV-25> 근로자가구 대 근로자외가구의 비소비지출의 항목별 구성비 비교

(단위: 천원, %)

	1982		1989	
	근로자가구	근로자외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외가구
가계지출	255.4(100.0)	281.5(100.0)	631.3(100.0)	707.6(100.0)
소비지출	239.1 (93.6)	270.9 (96.2)	561.7 (89.0)	657.8 (93.0)
비소비지출	16.3 (6.4)	10.7 (3.8)	69.6 (11.0)	49.8 (7.0)
· 조세	5.2 (2.0)	3.3 (1.2)	24.5 (3.9)	10.5 (1.5)
· 사회보장분담금	3.3 (1.3)	0.2 (0.1)	15.0 (2.4)	5.0 (0.7)
· 이자	3.1 (1.2)	3.8 (1.3)	6.3 (1.0)	7.0 (1.0)
· 기타비소비지출	4.6 (1.8)	3.4 (1.2)	23.9 (3.8)	27.3 (3.9)

주: ()안의 숫자는 가계지출에 대한 구성비임.

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표IV-26> 봉급자가구 대 노무자가구의 비소비지출의 항목별 구성비 비교

(단위: 천원, %)

	1982		1989	
	봉급자	노무자	봉급자	노무자
가계지출	354.0(100.0)	211.0(100.0)	842.2(100.0)	503.5(100.0)
소비지출	321.8 (90.9)	201.8 (95.6)	725.1 (86.1)	462.6 (91.9)
비소비지출	32.2 (9.1)	9.2 (4.4)	117.1 (13.9)	40.9 (8.1)
· 조세	12.2 (3.4)	2.1 (1.0)	47.0 (5.6)	10.9 (2.2)
· 사회보장분담금	8.4 (2.4)	1.1 (0.5)	25.9 (3.1)	8.4 (1.7)
· 이자	3.8 (1.1)	2.8 (1.3)	8.9 (1.1)	4.7 (0.9)
· 기타비소비지출	7.9 (2.2)	3.1 (1.5)	35.3 (4.2)	17.0 (3.4)

주: ()안의 숫자는 가계지출에 대한 구성비임.

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4. 其他支出

기타지출은 기타수입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재산상태에는 실질적인 증감이 없이 재산의 형태가 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자본거래상의 지출을 의미한다. 1989년 현재 기타지출의 항목별 구성비를 보면 <표IV-2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구의 저축수단은 주로 금융기관을 이용한 저금이며 契를 이용하는 비중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저금의 경우에는 봉급자가구가 노무자가구보다 많은 반면에 계부은 금액의 비율은 노무자가구가 봉급자가구보다 높다. 그러나 노무자가구나 봉급자가구 모두 저금액이 계부은 금액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따라서 봉급자가구는 노무자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선호한 반면에 노무자가구는 아직도 계를 이용한 저축에도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빌린돈 같은 금액과 월부·외상 같은 금액의 경우 금액면에서는 봉급자가구가 많지만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IV-27> 기타 지출의 항목별 구성비 (1989)

(단위: 천원, %)

	근로자가구		
		봉급자	노무자
총 지 출	1342.2(100.0)	1818.2(100.0)	1064.9(100.0)
가계지출	631.3 (46.8)	842.2 (46.3)	503.5 (47.3)
· 소비지출	561.7 (41.6)	725.1 (39.9)	462.6 (43.5)
· 비소비지출	69.6 (5.2)	117.1 (6.4)	40.9 (3.8)
기타지출	565.0 (41.9)	795.7 (43.8)	425.1 (39.9)
· 저 금	302.9 (22.5)	457.4 (25.2)	209.2 (19.6)
· 계부은금액	34.5 (2.6)	33.6 (1.8)	35.0 (3.3)
· 빌린 돈	68.6 (5.1)	92.5 (5.1)	54.1 (5.1)
· 같은금액			
· 월부·외상	25.0 (1.9)	29.4 (1.6)	22.3 (2.1)
· 같은금액			
· 기 타	134.1 (9.9)	182.9 (10.1)	104.5 (9.8)
기말현금잔고	152.96(11.3)	180.2 (9.9)	136.36(12.8)

주: ()안의 숫자는 총지출에 대한 구성비임.

V. 都市勤勞者家口의 家計收支

제Ⅲ장과 제Ⅳ장에서는 각각 도시근로자가구의 수입 및 지출구조를 살펴보았는데 본장에서는 이들을 한데 묶어 가계수집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도시근로자가계의 연도별 평균소비성향 및 흑자율 추이를 보면 <표V-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982년에서 1987년까지는 소득수준향상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하다가 1988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87년까지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노무자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낮은 데 반하여 1988년부터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봉급자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이 증가하면 평균소비성향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노무자가구는 1988년에도 평균소비성향은 전년에 비하여 감소하였고 1989년에야 약간 증가하였으나 1988년 이후 봉급자가구의 소득은 높은 임금인상을 반영하여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소비성향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이 1988년의 서울올림픽 이후 사회문제가 된 소위 과소비현상이 주로 소득수준이 높은 봉급자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1988년 이후의 높은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증가를 반영하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한편 연도별 도시근로자가구의 흑자율 추이는 소비성향의 변화추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1987년까지는 상승하다가 1988년 이후 감소하고 있고 1987년까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노무자가구의 흑자율이 낮았으나 1988년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역전되고 있다.

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를 소득 10분위별로 살펴보면 <표V-2> 및 <표V-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고소득계층일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낮고 흑자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케인즈」(Keynes)型的 단기소비함수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1982년의 경우 제1분위 및 제2분위계층의 근로자가구가 적자를 보였으나 1989년의 경우에는 제1분위계층의 근로자가구만 적자를 보임으로써 소득수준향상에 따라 적자가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경제발전을 통한 빈곤가구의 감소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하위 10%계층의 근로자가구는 월평균 50천원의 적자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흑자가구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겠다고 하겠다.

<표V-1>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소비성향 및 흑자율

(단위: %)

		1982	1985	1986	1987	1988	1989
평균소비성향	평균	79.3	76.1	74.8	73.5	74.2	76.4
	봉급자	76.5	76.0	73.9	72.7	75.3	78.0
	노무자	81.8	77.1	76.6	75.2	74.0	74.9
흑자율	평균	20.7	23.9	25.2	26.4	25.8	23.6
	봉급자	23.5	24.0	26.1	27.3	24.7	22.0
	노무자	18.2	22.9	23.4	24.8	26.0	25.1

주: 1)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가처분소득) × 100

2) 흑자율 = [(소득-가계지출)/가처분소득] × 100

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표 V-2〉 근로자가구의 소득 10분위별 월평균 가계수지(1982)

(단위: 천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소득(A)	92.9	152.8	188.9	218.7	249.8	282.6	324.6	379.7	467.1	764.8
가계지출(B)	123.9	153.3	178.8	189.9	212.0	228.3	263.8	294.2	352.9	529.5
· 소비지출(C)	121.1	149.3	172.5	182.7	203.4	217.7	248.1	274.4	327.2	472.0
· 비소비지출(D)	2.9	4.0	6.3	7.2	8.5	10.6	15.7	19.8	25.8	57.6
가처분소득 (E=A-D)	90.0	148.8	182.6	211.5	241.2	272.0	308.9	359.9	441.3	707.3
평균소비성향(%) (C/E)	134.5	100.3	94.5	86.4	84.3	80.0	75.9	76.2	74.1	66.7
흑자액(F=A-B)	-31.0	-0.5	10.1	28.8	37.8	54.3	60.8	85.6	114.3	235.3
흑자율(%) (F/E)	-34.5	-0.3	5.5	13.6	15.7	20.0	18.6	23.8	25.9	33.3

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2 도시가계연보』.

〈표 V-3〉 근로자가구의 소득 10분위별 월평균 가계수지(1989)

(단위: 천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소득(A)	252.8	403.3	485.9	561.2	638.1	723.1	828.9	970.7	1204.9	1979.0
가계지출(B)	302.6	364.1	408.9	457.9	516.3	596.0	640.6	746.1	886.3	1393.1
· 소비지출(C)	298.0	342.7	382.5	424.4	472.8	527.3	576.1	669.5	779.0	1150.6
· 비소비지출(D)	11.8	21.4	26.4	33.5	43.5	68.7	64.6	76.6	107.3	241.4
가처분소득 (E=A-D)	241.0	381.9	459.5	527.7	594.6	654.4	764.3	894.1	1097.6	1737.6
평균소비성향(%) (C/E)	123.7	89.7	83.2	80.4	79.5	80.6	75.4	74.9	71.0	66.3
흑자액(F=A-B)	-49.8	39.2	77.0	103.3	121.8	127.1	188.3	224.6	328.6	585.9
흑자율(%) (F/E)	-20.7	10.3	16.8	19.6	20.5	19.4	24.6	25.1	29.0	33.7

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9 도시가계연보』.

〈표 V-4〉에서 〈표 V-8〉까지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본 도시근로자가구의 1989년도 가계수지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표 V-4〉를 보면 가구주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소득과 지출이 모두 증가하지만 소득증가 속도가 더 빨라 평균소비성향도 증가하며 흑자율은 감소하고 있다. 가처분소득은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많아지지만 가계의 흑자규모는 가구주의 연령이 30대일 때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를 보면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흑자규모는 가구원수가 많아아지만 평균소비성향은 가구원이 4명이 될 때까지는 증가하나 4명이상이 될 때에는 거의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V-6〉에서 봉급자가구와 노무자가구를 비교해 보면 소득에 있어서는 봉급자가구가 노무자가구보다 1.6배나 많으나 비소비지출에 있어서 봉급자가구가 노무자가구를 크게 상회하여 가처분소득은 봉급자가구가 노무자가구보다 1.5배 많다. 즉 봉급자가구와 노무자가구간의 가처분소득의 격차는 소득의 격차보다 축소되어 있다. 평균소비성향은 봉급자가구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무자가구보다 높게 나타나 있다. 즉 노무자가구는 적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저축하려는 노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봉급자가구와 노무자가구간의 가처분소득의 격차는 312천원이나 흑자액의 격차는 50천원으로 축소되어 있다. 가구주의 학력수준별 가계수지를 보면 학력간의 현격한 소득격차에도 불구하고 평균소비성향에 있어서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고졸가구의 소비성향이 가장 낮고 전문대 이상의 가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 있다(표 V-7). 그 결과 가구주의 학력에 따른 가계의 흑자규모에는 큰 차이가 없다. 주거형태에 따른 가계수지를 비교해 보면 〈표 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소비성향은 전세가구가 가장 낮고 자가가가 가장 높다. 그 결과 흑자액은 전세가구가 가장 많고 월세가구도 자가가가와 큰 차가 없다. 이는 전·월세가구는 소득이 낮지만 내집마련 등을 위하여 소비를 최대한 절제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 V-4〉 근로자가구의 가구주 연령계층별 월평균 가계수지 (1989)

(단위: 천원)

	29세 이하	30~39세	30~39세	50세 이상
소 득 (A)	664.7	775.2	920.0	943.4
가계지출 (B)	500.4	592.7	752.8	771.7
· 소비지출 (C)	458.1	523.4	666.3	684.8
· 비소비지출 (D)	42.3	69.3	86.5	86.9
가처분소득 (E=A-D)	622.4	705.9	833.5	856.5
평균소비성향(x) (C/E)	73.6	74.1	79.9	79.9
흑 자 액 (F=A-B)	164.3	182.5	167.2	171.7
흑 자 율(x) (F/E)	26.4	25.9	20.1	20.1

〈표 V-5〉 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수지 (1989)

(단위: 천원)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소득 (A)	595.1	700.7	812.6	927.2	1015.7
가계지출 (B)	417.5	524.9	654.2	743.1	811.8
· 소비지출(C)	368.1	470.1	576.6	663.4	734.8
· 비소비지출(D)	49.4	54.9	77.6	79.7	77.0
가치분소득 (E=A-D)	545.8	645.9	735.0	847.5	938.7
평균소비성향(%) (C/E)	67.4	72.8	78.4	78.3	78.3
흑자액 (F=A-B)	177.7	175.8	158.4	184.1	203.9
흑자율(%) (F/E)	32.6	27.2	21.6	21.7	21.7

〈표 V-6〉 근로자가구의 가구구분별 월평균 가계수지 (1989)

(단위: 천원)

	봉급자	노무자
소득 (A)	1046.7	658.3
가계지출 (B)	842.2	503.5
· 소비지출(C)	725.1	462.6
· 비소비지출(D)	117.1	40.9
가치분소득	929.6	617.5
평균소비성향(%) (C/E)	78.0	74.9
흑자액 (F=A-B)	204.5	154.8
흑자율(%) (F/E)	22.0	25.1

〈표 V-7〉 근로자가구의 가구주 교육정도별 월평균 가계수지 (1989)

(단위: 천원)

	중졸 이하	고 졸	전문대 이상
소 득 (A)	640.2	745.5	1106.5
가계지출 (B)	496.7	567.3	906.7
· 소비지출(C)	461.7	512.5	768.7
· 비소비지출(D)	35.0	54.8	138.0
가치분소득 (E=A-D)	605.3	690.7	968.5
평균소비성향(x) (C/E)	76.3	74.2	79.4
흑 자 액 (F=A-B)	143.5	178.3	199.8
흑 자 율(x) (F/E)	23.7	25.8	20.6

〈표 V-8〉 근로자가구의 주거형태별 월평균 가계수지 (1989)

(단위: 천원)

	자 가	전 세	월 세
소 득 (A)	984.7	704.8	608.8
가계지출 (B)	816.2	499.6	477.9
· 소비지출(C)	716.1	450.2	443.3
· 비소비지출(D)	100.1	49.4	34.6
가치분소득 (E=A-D)	884.6	655.5	574.1
평균소비성향(x) (C/E)	81.0	68.7	77.2
흑 자 액 (F=A-B)	168.5	205.3	130.9
흑 자 율(x) (F/E)	19.0	31.3	22.8

VI. 要約

본 연구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도시가계연보와 1989년도 도시가계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경제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근로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근로자가구의 특성을 보면,

①人的構成에 있어서 근로자가구는 근로자외가구에 비하여 가구당 인원수가 적은 반면 취업인원수는 많고, 1980~85년의 경제침체기에는 근로자가구의 취업인원은 안정적인 데 반하여 근로자외가구의 취업인원은 크게 감소하여 근로자외가구에 비해 근로자가구의 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②가구주의 학력수준에 있어서는 전문대 이상이 근로자가구가 25%, 근로자외가구가 21%로서 前者가 後者보다 다소 높으며, 근로자가구내에서는 봉급자가구는 약 60%가 전문대 이상인데 반하여 노무자가구는 전문대 이상이 4%에도 못 미치고 있어 가구주의 학력과 직업의 종류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중졸이하 가구는 하위 40% 소득계층에 56%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전문대 이상의 가구는 상위 20% 소득계층에 41%가 집중되어 있어 가구주의 학력은 가구의 소득과도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가구구분별 소득분포에 있어서는 주로 정신적·기술적·관리적인 사무에 종사하는 봉급자가구는 상위 40% 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직종별 소득분포에 있어서도 생산직가구주의 경우 하위 40% 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전문기술직 및 행정관리직과 사무직의 경우 상위 40% 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생산직근로자의 求人難의 해소를 위해서는 생산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④도시근로자가구중 자가거주가가구는 40.0%에 불과하고 전세가가구가 36.9%, 월세가가구가 20.4%로서 전·월세가가구가 57.3%이며 기타(무상 및 관공사택)가 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구분별로 보면 노무자가구는 봉급자가구에 비하여 자가 거주비율이 현저히 낮아 생산적인 노무자가구의 주거생활안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근로자가구 중 32.6%가 하위 40% 소득계층에 속하면서 동시에 전·월세가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32.6%의 근로자가구는 이들의 소득수준으로 볼 때 自力으로는 내집마련이 불가능하므로 이들에 대한 장기임대주택의 공급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2. 도시근로자가구의 수입구조를 보면,

①소득의 주원천은 가구주의 근로소득으로서 1989년 현재 가계소득의 약 74%를 점하고 있으며 가구주 이외의 가구원의 취업증가 경향에 따라 가구주의 근로소득 비중은 감소하고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비중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고소득가구일수록 근로소득의 비중이 낮고 사업 및 부업소득, 자산소득의 비중이 높으며,

③가구주의 학력수준에 따른 가구별 소득격차는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고 가구주의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주 이외의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가구소득도 증가하지만 가구주의 연령계층별 근로소득은 가구구분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증가에 따라 가구주의 근로소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직업이 가장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무원외 사무종사자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주의 연령이 40대까지는 매우 빠른 속도로 근로소득이 증가하지만 50대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사무종사자의 50대 이후의 직업안정문제가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주었다. 한편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는 40대까지는 소득이 증가하지만 연령증가에 따른 소득증가가 아주 미미하며 50대 이후에는 20대의 소득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시 및 일용노무자의 경우에는 30대에 소득이 약간 증가하다가 40대 이후에는 20대의 소득보다도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노무자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안정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⑤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구조를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自家家口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재산소득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전·월세 가구는 근로소득의 비중과 사업 및 부업소득은 높으나 재산소득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⑥사회보장수혜 및 사회보장분담금의 부담은 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구분별로는 봉급자가구가 노무자가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 수혜를

더욱 필요로 하는 저소득계층보다는 고소득계층에게 그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나 그정도가 선진제국에 비해 심하므로 저소득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3. 도시근로자가구의 지출구조를 보면,

- ①근로자가구는 근로자외가구보다 지출수준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는 소득에 있어서도 근로자가구가 근로자외가구보다 다소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 ②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식료품비의 구성비는 1963년의 61.3%에서 1989년에는 32.4%로 엔겔계수가 4반세기 동안 크게 낮아져 생활수준 향상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동일 시점에서는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엔겔계수도 낮아 엔겔의 제1법칙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③또한 식료품비의 내역에 있어서도 1963년에는 주식비 63%, 부식비 32%, 외식비 2%로서 식생활이 主食 위주로 이루어지던 것이 1989년에는 주식비 21%, 부식비 54%, 외식비 20%로서 주식보다는 副食 위주로 식생활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외식비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④주거비의 비중은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슈바베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세뿐만 아니라 자가 및 전세평가액까지 포함한 廣義의 주거비는 하위 40% 소득계층의 경우 소득 및 가계지출의 약 20%를 점하며 전세가구의 경우 가계지출의 약 20%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월세 가격의 안정이 근로자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었다.
- ⑤소득증가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패턴의 변화를 반영하여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개인교통비의 비중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에 공공교통비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⑥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문화관련비용의 비중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관련비용의 비중은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 ⑦가계지출액에 있어서는 근로자외가구가 근로자가구보다 1982년에는 1.10배, 1989년에는 1.1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득도 이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세부담에 있어서는 근로자가구가 근로자외가구보다 1982년에는 1.6배, 1989년에는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가구가 근로자외가구에 비하여 조세를 2배이상 더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담의 불형평이 계속 확대추세에 있다는 것은 稅源이 완전히 노출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重課稅를 하고 있는 현행 조세제도의 문제점으로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 ⑧근로자가구의 주요 저축방법은 금융기관을 활용한 저금이며 契를 이용하는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봉급자가구와 노무자가구를 비교해 보면 노무자가구가 계를 이용하여 저축하는 비중이 봉급자가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수입과 지출을 종합한 가계수지에 있어서는,

- ①근로자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1982년에서 1987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88년 이후 증가추세로 반전하여 서울올림픽 이후 사회문제화되었던 過消費 현상의 일면을 보여주었다.
- ②고소득가구일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낮게 나타나 「케인즈」(Keynes)型的 단기 소비함수가 우리나라의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비형태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③소득향상에 따라 적자가구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하위 10%의 근로자가구는 매월 약5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바,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 ④노무자가구는 봉급자가구에 비하여 소득은 낮지만 가계의 흑자율은 봉급자가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저축을 증대하여 생활수준향상을 기하려는 이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 ⑤주거형태별로는 自家家口의 소비성향이 가장 높고 전세가구의 소비성향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흑자규모에 있어서는 전세가구가 가장 많고 월세가구도 자가가구와 큰 차이가 없어 전·월세가구의 내집마련을 위한 소비의 절제노력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었다.

參考文獻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都市家計年報』, 各년도.

박영범·조우현, 『표준생계비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89.

徐相穆 外, 『貧困의 實態와 零細民對策』, 韓國開發研究院, 1981. 10.

朱鶴中,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下)』, 韓國開發研究院, 1982.

Duesenberry, J.S., *Income, Saving, and the Theory of Consumer Behavior*,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49.

Judge, Ken. "The British Welfare State in Transition", *Modern Welfare States*, Robert R.Friedmann, Neil Gilbert, & Moshe Sherer(ed.), 1987.
pp. 1~43.

Morris, Robert. "Rethinking Welfare in the United States: The Welfare State in Transition", *Modern Welfare States*, Robert R.Friedmann, Neil Gilbert, & Moshe Sherer(ed.), 1987. pp. 83~109.